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6976호 2025년 10월 20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56호) 8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57호)	10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58호)	14
○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59호)	18
○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0호)	21
○ 경상북도의회고문번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1호)	24
○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2호)	28
○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3호)	31
○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4호)	34
○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5호)	38
○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6호)	40
○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7호)	42
○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8호)	44
○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69호)	49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0호)	54
○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1호)	56
○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2호)	58
○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3호)	59
○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4호)	61
○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5호)	81
○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6호)	84
○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7호)	88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8호)	91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79호)	98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0호)	101
○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1호)	103
○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2호)	105

-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3호) 120
-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4호) 124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5호) 131
-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5386호) 132

■ 고 시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5호) 134
- 상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6호) 136
- 사망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7호) 158
- 지방하천 신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8호) 175
- 지방하천 안림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9호) 177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0호) 180
- 사망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1호) 181
- 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2호) 190

■ 공 고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59호) 195
-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61호) 196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65호) 197
- 정보통신공사업자 폐업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73호) 198

시 군

■ 고 시

- 경주 도시계획시설[경주교~철교간 도시계획도로(중1-2)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209호) 200
- 경주 외동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5-213호) 206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시 고시 제2025-162호) 227
- 열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고령군 고시 제2025-1464호) 244

■ 공 고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5-2223호) 277
- 고령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5-1456호) 286
- 칠곡 군계획시설(도로:중로2-10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5-1228호) 28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09호) 293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0호) 294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1호) 295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2호) 297

■ 공 고

- 직인 폐지 공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공고 제2025-67호) 299



경 상 북 도

조 례

경상북도 조례 제5356호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활성화하고 그 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 및 기관·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및 기관·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기증 도서의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지식 자원 공유 확산을 위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불용 도서 중 이용 가치가 있는 양호한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 및 담당 공무원 등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57호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
3.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
4. 배움터지킴이 활동 지원
5. 사업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촉 공고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교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안전에 활동 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장이 위촉한 배움터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른 배움터지킴이로 본다.

경상북도 조례 제5358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4. 본청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

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누리집 등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행정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집행기관은 청구된 행정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59호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아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차별의 예방
2. 교육과정의 조정
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5. 교원 연수 등

②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일반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장은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제9조(순회교육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0호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1호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받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입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 건 실 적 부

종류 \ 구분	사건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 고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 타						

경상북도 조례 제5362호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2.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한의약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5.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6.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7.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3호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시장·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4. 전세버스 음주 여부 확인용 호흡 측정기 보급
5.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
6. 그 밖에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받은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4호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재해 예방”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 청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한함.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구축
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6.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기설 사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서,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5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보급, 에너지이용”을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농업의 농외소득 창출 등”을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으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관련 도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6호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내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연금 비용부담) 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연금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비용부담)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도와 도내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100분의 30

2. 시군: 100분의 7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7호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 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관한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4.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과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8호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돌봄”이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센터의 진료대상) ① 센터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방법,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2. 공공의료전문가

3. 재활치료전문가

4. 사회복지사

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어린이 치료, 교육, 돌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69호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
5.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개발·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
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지역사회 치매관련사업
4. 경상북도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광역치매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광역치매센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2. 제7조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운영

4.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법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법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0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시군별	지역 및 등급			
		특지	갑지	을지	병지
벽지 지역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죽장면 입암리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부항면 대야리	부항면 사등리, 증산면 유성리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상주시		화북면 중벌리· 운흥리·입석리	모서면 정산리	화북면 용유리, 은척면 무릉리
	문경시				문경읍 상리, 가은읍 왕능리, 동로면 적성리, 마성면 외어리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안사면 안사리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수비면 수하리		청기면 청기리, 수비면 발리리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예천군			효자면 고향리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천면 분천리, 재산면 동면리	춘양면 서벽리, 소천면 임기리, 석포면 석포리, 재산면 현동리, 명호면 삼동리
	울진군				북면 하당리
도서 지역	울릉군		서면 태하리· 남양리, 북면 천부리	울릉읍 도동리· 사동리·저동리	

※ 비고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병지로 한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1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조제1호의폭력”을 “제3조제1호의 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의 이해 및 상담기법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
2.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점검 및 개선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2호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3호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야시간”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로 한다.

제2조 중 ““공공심야약국”이란”을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으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을 “약국 중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4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비용”이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미술작품”이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을 말한다.

제3조(미술작품의 설치금액)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제2호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4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2. 별지 제2호서식의 작가경력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인 경력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7.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전산매체(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 또는 철거(법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이전(철거)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처리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미술작품의 경계에서 5미터 이내 위치 변경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건축주와 시장·군수에게 통보 하고, 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투명성 확보 및 신진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한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각 심의위원은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6조(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4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출연 등)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 과장, 건축디자인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위원을 회의 때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선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의 실명 채점으로 하고,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미술작품의 참여 금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에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

제15조(회의록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비밀 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도지사는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확인서 작성, 결과 통보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자문·권고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심사단의 구체적인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미술작품 심사 회피) 심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단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심사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21조(수당 등)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에 참석한 심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	------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설계변경허가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총가액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설치예정일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 가. 건축주와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건축주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인 계약서 및 대행인-작가 계약서, 작가와 대행인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서 및 작가-대행인 계약서
※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 계약서 작성내용

- (1) 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제작·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2. 작가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3. 대행인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4.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별지 제5호서식)

6.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2부

가. 심의도서 작성내용

-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 미술작품개요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 작품설명판(표석)
(9) 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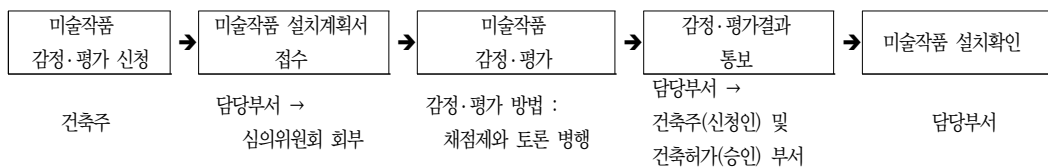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 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 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를 표기할 것(단, 동일작가의 작품 변경시는 변경 전·후의 작품사진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여 전·후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 작품도면에 작품재료·세부두께·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 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전산매체 1부(경상북도에서 별도요청 시)

9.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인적사항	성 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작가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	--

작품경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	---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일반사항	사업체명(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	---

첨부서류	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위 치					
건축주					
건축물 총연면적 (a)	계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m ²	m ²	m ²		
제외시설 면적 (b)	소계	m ²			
	주차장				
	기계실				
	변전실				
	공조실				
	전기실				
	발전실				
	기타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c)=(a)-(b)		m ²	m ²		
미술작품 설치비용	공동주택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c)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0.1%	계(①×②×③) 원
	공동주택외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c) m ²	② 표준건축비 원	③적용요율 0.5%	계(①×②×③) 원
합 계		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		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1/1,000 이상 7/1,000 이하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 5/1,000 이상 7/1,000 이하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

작가명	
-----	--

미술작품	작품명	
	크기	재질

사용금액 내역	구분		가격	비율	세부사항	
	창작비	작가창작비(Artist Fee)	천원	%		
		모형 및 원형제작비	천원	%	모형제작비	천원
					원형제작비	천원
	제작비	재료비	천원	%		
		인건비	천원	%		
	설치비	작품 운반비	천원	%		
		현장 설치비	천원	%		
		기초 및 부대공사비	천원	%		
	대행수수료		천원	%		
	행정비용		천원	%	심의도서제작비	천원
					모형제작비	천원
					기타	천원
	기타		천원	%	보험료	천원
					조명	천원
					분수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유의사항

-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비용은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이의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작가명		연락처	
미술작품	작품명		설치장소
	크기		재질
작품이미지			
유지·보존 계획 내용	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존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이전(철거)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	착공신고일	설계변경허가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이전·철거 전)	작가명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가액	설치일	
미술작품 개요 (이전·철거 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가액	설치(철거)예정일	
이전(철거) 사유·내용	[] 5m 이내 위치 변경 ※ 위치 변경의 경우 변경 전후를 알 수 있는 미술작품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을 이전(철거)하기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신축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

연번	발급 번호	건 축 주		건 축 물					출연내역	
		공공/ 민간	성 명	건물명	신축/ 증축	건축 허가일	용도	연면적	금액	출연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10호서식]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	심의일자
------	------

평가기준 및 배점			작 품 명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판 정	가결	70점 이상일 경우	
	부결	70점 미만일 경우	
비 고	부결및조각부사유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조례 제5375호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 위기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홍수·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의 침수·유실·붕괴·고립 등으로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이란 하천 위기상황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하천 위기대응체계”란 하천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위기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대응체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실시 및 활용 계획
3. 제6조에 따른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4. 중앙부처, 시·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하천 위기대응 훈련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응매뉴얼 작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운영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매년 정비·보완해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조치 및 비상근무체계
2. 중앙부처, 시·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3. 수방 관련 자재 및 장비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에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점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협의하는 경상북도 하천 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하천 상황
 2. 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3. 중앙부처, 시·군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천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점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협의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하천 상황 및 대응방법 게시)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하천 상황 점검결과와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하천 위기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6호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북도민의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 보호구역의 산림 중에서 국유림·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관리협약”이란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

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가. 산불감시

나. 임산물 굴취·채취 등 불법행위 감시

다.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림의 공익증진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현황 및 전망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연구·정책개발
5.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 육성 및 지원

6. 산림보호관리협약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현황 및 통계조사
 2.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지원
 5. 산림의 공익기능 관련 교육·홍보 지원
 6. 산림소유자에 대한 묘목 및 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7.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활동 지원
 8.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9.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개발
 10.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산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식목활동 지원)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식목 활동 캠페인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되,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목적에 맞는 식목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산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7호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 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8호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를 말한다.
5.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관광사업자·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홍보 및 초청홍보여행
3.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
4.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
6. 제6조의 경상북도관광안내소 운영
7. 웰니스 관광, 음식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8.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
9. 다른 시·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10. 관광 관련 공모전 개최
11.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상북도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상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1. 경상북도관광홍보관
2. 경상북도종합관광안내소

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2. 도내 관광자원 홍보
3.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전시·판매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시 및 지정·변경·해제 사유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4. 특별관리지역의 특징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경상북도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시·군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도내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도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되, 정관에서 규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공동 회장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군관광협의회를 단체회원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시·군관광 협의회는 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특구 지정 요건 시설기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관광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 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된 재정지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본다.

제4조(경상북도관광홍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관광홍보관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관광홍보관은 이 조례 제6조 제2항제1호의 경상북도관광홍보관으로 본다.

【별표】

경상북도 관광특구 지정 요건 시설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의시설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2.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테마파크시설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펜션, 관광지 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 ▶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79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서문화“를 ”독서문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독서교육 기회 제공 등)”을 “(독서 기회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독서교육”을 “독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독서문화 진흥 활동 지원)”을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을 “위하여”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독서의 달 행사 등)"을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도록"을 "개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포상 등)"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를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 또는 표창에 필요한"을 "포상의 기준과"로 한다.

제9조 중 "하며,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을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80호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대해 컨설팅, 경영 및 농어업기술 교육, 영농·영어 정착금 등”을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정착 자금
2.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3. 농어업 관련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4.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5.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 제목“(후계농어업인들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을 “(후계농어업인들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81호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북도민들”을 “경상북도민과 방문객”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객”이란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면회 오는 경우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울릉군민에게 지원해주는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제3조의 노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운임(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임을 지원 받는 여객선 이용자는 개인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82호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2. 도로: 부지의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일 것

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결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2.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의 준공업 지역일 것

나. 부지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와 연결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군관리계획 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기존 수목 현황
8.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9.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0.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1. 그 밖에 시장·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시·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입안 제안의 공고 등) 영 제6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 현황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한다.

제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계약할 때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 등은 별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 한다)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0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심복합개발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8조제2항 관련)

1.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해당권역”이란 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 2) “사무소등”이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가.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권역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 1) 감정평가사의 수
-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 3) 기존의 참여 실적
-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공간적 범위: 해당권역 내에 2이상의 사무소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 공고일이 2025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실적에 포함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은 해당권역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3. 선정 제외 대상자

-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절차

-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 3) 평가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	평 가 기 준 (등급)					비고
	가	나	다	라	마	
1			(1)			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2	2	2	2	1	
10	2	2	2	2	2	
11	2	2	3	2	2	
12	2	3	3	2	2	
13	2	3	3	3	2	
14	3	3	3	3	2	
15	3	3	3	3	3	

5. 그 밖의 사항

-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시장·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해당권역 내에 있는 소속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총괄)

구분	항목 및 점수	평가 기준						비고	
								정성 정량	절대 상대
① 감정평가 사의 수 (10)	① 평가 수행 사무소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	구분	10명 초과	8 ~ 10명	5 ~ 7명	3 ~ 4명	2명 이하	정량	절대
		평점 (10)	10	8	6	4	2		
②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정량	상대
		평점 (15)	15	13	11	9	7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정량	상대
		평점 (5)	5	4	3	2	1		
③ 기존의 참여 실적 (20)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정량	상대
		평점 (5)	5	4	3	2	1		
	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정량	상대
		평점 (15)	15	13	11	9	7		
④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	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정량	절대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전책, 과태료			
		평점	4	3	2	1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 다 2배를 감점							
⑤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⑦ 평가 세부계획 [(20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						정성	상대
합 계		80[(100)]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심사 기준표(항목별 세부)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배점	10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10명 초과	8 ~ 10명	5 ~ 7명	3 ~ 4명	2명 이하
	평점 (10)	10	8	6	4	2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무소 등이 해당권역에서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 3년)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 건수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감정평가법인등의 해당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 수행 금액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해당권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배점	5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입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5)	5	4	3	2	1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군수가 선정(시장·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배점		15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수입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 수입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간등급	가	나	다	라	마
	평점 (15)	15	13	11	9	7
세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해당권역 내 사무소등이 해당권역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군수가 선정(시장·군수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정한다.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⑥ 행정처분(최근 3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배점	30점		
지표정의 (정량·상대)	감정평가법인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징계) 실적을 합산하여 감점한다.				
지표산식	○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구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견책, 과태료
	평점	4	3	2	1
세부 평가기준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별지 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 관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시행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시행 예정일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토지등 총 소유자	명
	동의자수	명(동의율 %)
	노후도	(노후도 비율)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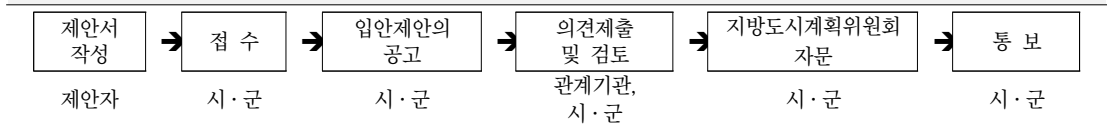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3.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수수료 없음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상북도 조례 제5383호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인사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근무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가. 일근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 나. 교대 근무자의 경우, 실거주 지역으로부터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2. “숙소”란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3. “비상대기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원 조기 확보를 위해 비상대기시설로 사용하는 숙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거리 근무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비상대기시설 등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숙소 및 비상대기시설 입주대상자 선정·퇴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거리 근무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보된 근무지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있는 원거리 근무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원거리 근무자

제8조(지원 내용 등) ①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와 비상대기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거리 근무자가 숙소와 비상대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제한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을 상실하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84호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에 관한 경상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위촉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방관서장”이란 경상북도의 시·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5.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간) 소방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 운영 기간은 연 8개월의 범위에서 관서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지킴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의 근무 지시에 따라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관련 생활 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경상북도민 의견 파악 및 보고
2.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홍보·캠페인 및 제도 안내
3.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4. 소방안전 관련 위법 사항 제보 등
5. 기타 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 ①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위촉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위촉한 지킴이에 대하여 별지 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모집)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지킴이 운영 인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 예산, 소방공무원의 인원 등 소방관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 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지킴이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킴이는 비밀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집 수당의 지급 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방안전지킴이 위촉장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위촉기간 :

위 사람을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방서의 소방안전지킴이로 위촉합니다.

. . .

경상북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소방안전지킴이로 위촉되어 조사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기업보안과 관련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업무 중은 물론 조사단의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서약자 :

(서명)

경상북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소방안전지킴이 지정서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을 「경상북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지킴이로 지정합니다.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경상북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상북도 조례 제5385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 의 수 당 : 30,000원/건당
2. 참 석 수 당 : 70,000원/회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조례 제5386호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0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5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10. 20.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당초	지방하천	교 량	〈윤동교〉 L=111.0m, B=10.5m (영구 3,629㎡) (일시 2,294㎡)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163-7번 지 외 7필지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1.31.
변경	(대가천)	신 설	〈윤동교〉 L=111.0m, B=10.5m (영구 4,199㎡) (일시 5,136㎡)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1163-7번 지 외 7필지	성주로 3200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당초	지방하천	교 량	〈사창교〉 L=200.0m, B=9.0m (영구 3,985㎡) (일시 1,998㎡)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93번 지 외 9필지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1.31.
변경	(대가천)	신 설	〈사창교〉 L=200.0m, B=9.0m (영구 4,120㎡) (일시 6,032㎡)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93번 지 외 9필지	성주로 3200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당초	지방하천	교 량	〈사창교 가교〉 L=200.0m, B=6.65m (영구 -㎡) (일시 1,606㎡)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93번 지 외 9필지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수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1.31.
변경	(대가천)	신 설	〈사창교 가교〉 L=200.0m, B=6.65m (영구 -㎡) (일시 1,589㎡)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93번 지 외 9필지	성주로 3200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7.12.31.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6호

상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상주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I. 상주 일반산업단지 일반현황 (변경)

1. 산업단지 개요 (변경)

- 명 칭 : 상주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동 일원
- 면 적 : (기정) 393,146㎡
(변경) 391,310.3㎡ (감1,835.7㎡)
- 관리기관 : 상주시장

2. 조성목적

- 산업용지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가용지 확보
-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농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
- 소득기반 조성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개발기간 : (기정) 2018년~2023년 12월31일

(변경) 2018년~2026년 12월31일

4. 추진경위 (변경)

- 2016. 12. ~ 2017. 06. : 기업체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
- 2017. 09. ~ : 기업체별 투자의향서 접수
- 2017. 12.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17. 12.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8. 08. 09. : 2018년도산업단지지정계획(변경)고시(경상북도고시제2018-234호)
- 2018. 06.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201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8. 12. :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9. 01. 03. :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상북도고시 제2019-3호)
- 2019. 09. 16.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상주시 → 경상북도)
- 2019. 10. :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 2020. 09. :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 2020. 11.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
- 2021. 02. :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21. 10. : 지원시설용지 분양
- 2021. 12. : 미협의회지 수용재결 완료(사유지 보상 완료)
- 2022. 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10. :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 2022. 1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
- 2023. 12. : 상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승인고시(경상북도고시제2023-394호)
- 2024. 07.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고시제2024-252호)
- 2024. 07. :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 2025. 09. : 상주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경상북도고시제2025-342호)

5. 토지이용현황 (변경)

구 분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비고
면 적 (㎡)	기정	393,146	238,032	12,319	136,621	6,174	
	변경	391,310.3	237,434.3	12,160.1	134,743.6	6,972.3	
구성비(%)	기정	100.0	60.6	3.1	34.7	1.6	
	변경	100.0	60.7	3.1	34.4	1.8	

6. 관리대상지역 분양현황 (변경)

구 분		계획면적 (㎡)	분양대상 면적(㎡)	분 양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기정	계	393,146	250,351	154,762	95,589	250,351		
	산업시설	238,032	238,032	150,481	87,551	238,032	2018 ~ 2023	상주시
	지원시설	12,319	12,319	4,281	8,038	12,319		
	공공시설	136,621	-	-	-	-		
	기타시설	6,174	-	-				
변경	계	391,310.3	249,594.4	155,307	94,287.6	249,594.4		
	산업시설	237,434.3	237,434.3	150,397	87,037.5	237,434.3	2018 ~ 2026	상주시
	지원시설	12,160.1	12,160.1	4,910	7,250.1	12,160.1		
	공공시설	134,743.6	-	-	-	-		
	기타시설	6,972.3	-	-				

※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및 태양력 발전업은 사업구역 내 전 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치

(기정)

※ 공공시설(136,621㎡)은 산업단지계획의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가압장, 배수지, 저류시설임

(변경)

※ 공공시설(134,743.6㎡)은 산업단지계획의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가압장, 배수지, 저류시설임

(기정) ※ 기타시설(6,174㎡)은 농업용수로임

(변경) ※ 기타시설(6,972.3㎡)은 농업용수로임

7. 입주현황 (계획)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m ²)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계	22	16		40	237,434.3	12,160.1	-	249,594.4
현재	4	6	-	10	150,397	4,910	-	155,307
향후계획	18	10	-	30	87,037.5	7,250.1	-	94,287.6

※ 입주업체는 산업단지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및 분양(입주)계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입지여건 (변경)

시설명		현황	시행기관
교통	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0.4km) 이용 - 국도 25호선(2차선) 인접 - 국도 3호선 이용 : 5km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철도	경북선 상주역 : 5km	국가철도공단
	항공	대구국제공항 : 100km	한국공항공사
도로 (단지내)	기정	- 노선 : 13개소(중로 6개, 소로 7개) - 연장 : 3,663m(중로 2,925m, 소로 738m) - 면적 : 67,185㎡(중로 63,846㎡, 소로 3,339㎡)	사업시행자
	변경	- 노선 : 13개소(중로 6개, 소로 7개) - 연장 : 3,662m(중로 2,925m, 소로 737m) - 면적 : 65,524㎡(중로 62,144㎡, 소로 3,380㎡)	
용수	기정	1,961㎥/일 - 공업용수 1,711㎥/일 - 생활용수 250㎥/일 - 도남정수장에서 만산배수지까지 기 매설되어 있는 D=700mm 기존 송수관로에서 분기(외답삼거리 인근)하여 사업부지 내 배수지로 연결 계획, 본 산업단지 경계부부터 전용 송수관로를 D=200mm, L=770m 신설 계획, 가압장을 거쳐 단지 내 도로를 따라 배수지(V=1,200ton)로 용수를 공급토록 할 계획임 - 사업부지의 남측 배수지(A=1,200㎡, V=1,200㎡)를 설치하여 배수관로(D=80~300mm)를 통해 사업지구 내 각 시설별로 급수토록 계획	상주시
	변경	1,536㎥/일 - 공업용수 1,330㎥/일 - 생활용수 206㎥/일 - 도남정수장에서 만산배수지까지 기 매설되어 있는 D=700mm 기존 송수관로에서 분기(외답삼거리 인근)하여 사업부지 내 배수지로 연결 계획, 본 산업단지 경계부부터 전용 송수관로를 D=200mm, L=770m 신설 계획, 가압장을 거쳐 단지 내 도로를 따라 배수지(V=1,200ton)로 용수를 공급토록 할 계획임 - 사업부지의 남측 배수지(A=1,200㎡, V=1,200㎡)를 설치하여 배수관로(D=80~300mm)를 통해 사업지구 내 각 시설별로 급수토록 계획	
전력	기정	- 설비용량 23,151 kVA - 최대부하 17,562 kW	한국전력공사
	변경	- 설비용량 23,049 kVA - 최대부하 17,479 kW	
통신	기정	- 통신수요량 496회선 - 산업시설용 : 164 - 지원시설용 : 246 - 기타 공공시설 및 여유량 : 86	KT상주지점
	변경	- 통신수요량 492회선 - 산업시설용 : 164 - 지원시설용 : 243 - 기타 공공시설 및 여유량 : 85	

시설명		현황	시행기관
폐기물	기정	○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 621.9 kg/일/인 - 사업장폐기물 : 127.59 ton/일 - 지정폐기물 : 29.19 ton/일	사업시행자 (폐기물처리 사업자)
	변경	○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 506.0 kg/일/인 - 사업장폐기물 : 174.45 ton/일(가연성:91.27ton/일, 불연성 :83.18ton/일) - 지정폐기물 : 25.69 ton/일	
		○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의 성상을 고려하여 지정장소를 이용한 분리배출을 할 계획임 - 지정폐기물 :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 - 생활폐기물 : 재활용처리업체 위탁 처리(재활용) 및 상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가연성 및 불연성) - 음식물류 폐기물 : 상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	
우 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우수는 부지조성계획을 감안하여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기존 암거를 경유하여 최종 현신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본 지구의 전체 배수구역면적(131.83ha)은 지구 내 35.01ha, 지구 외 96.82ha임.	사업시행자
오·폐수	기정	○ 오폐수 발생량 1,191m³/일(공업폐수 980m³/일, 생활오수 211m³/일)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오수관로(D200mm)를 신설하여 사업지구 인근의 기존 오수관 및 차집관로를 통해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토록 계획	사업시행자
	변경	○ 오폐수 발생량 1,142m³/일(공업폐수 967m³/일, 생활오수 175m³/일) ○ 기 신설된 오수관로(D200mm)를 이용하여 사업지구 인근의 기존 오수관 및 차집관로를 통해 상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토록 계획	
공 원		○ 공원 2개소 3,143m ²	사업시행자
녹 지	기정	○ 녹지 8개소 49,200m ²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6개소)	사업시행자
	변경	○ 녹지 8개소 48,948.4m ²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6개소)	
재해방지용	기정	○ 저류시설 1개소 11,892m ²	사업시행자
저류지	변경	○ 저류시설 1개소 11,912.8m ²	
주 차 장		○ 주차장 3개소 3,946m ²	사업시행자
에너지 공급	기정	○ 열수요 133,347 Gcal - 직접열 : 47,977Gcal - 간접열 : 85,370Gcal	
	변경	○ 열수요 133,189 Gcal - 직접열 : 47,906Gcal - 간접열 : 85,283Gcal	
가스공급시설		○ 가스수요량 122Gcal/년, 12천Nm³/년 - 단독주택 : - Gcal/년, - 천Nm³/년 - 지원시설 : 122Gcal/년, 12천Nm³/년	

II. 상주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1. 관리기본방향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자립·자족의 웰빙형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자연조건을 이용한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 일체화되고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2.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변경)

- 관리대상 산업단지 면적 : (기정) 393,146㎡ (변경) 391,434.3㎡

구 분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비고
면적 (㎡)	기정	393,146	238,032	12,319	136,621	6,174	
	변경	391,310.3	237,434.3	12,160.1	134,743.6	6,972.3	
구성비 (%)	기정	100.0	60.6	3.1	34.7	1.6	
	변경	100.0	60.7	3.1	34.4	1.8	

○ 입주대상업종

[기 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고
대 분 류		중 분 류	
제조업	C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35114)	
부동산업	L	68 부동산임대업(6811)에 한함	
기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주1)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및 태양력 발전업은 사업구역 내 전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치

[변 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주1)}			비고
대 분 류		중 분 류	
제조업	C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29외 불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35114) ^{주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전지역
부동산업	L	68 부동산임대업(6811)에 한함	

주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11차 개정사항 반영, 통계청 고시 2024-2호,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

주2)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및 태양력 발전업은 사업구역 내 전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치

○ 입주업체 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분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은 C20129외 업종은 불가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분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부동산 임대업(L6811)은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공공시설구역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가압장, 유수지, 배수지〉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입주업체 제한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오염총량제 저촉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악취발생업종과 악취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 입주우선 순위

- 산업단지 입지 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이며, 첨단 고부가 창출 산업으로서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가능한 업종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비교 우위가 높은 업종
- 도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타 시·도에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및 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자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 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사후관리 계획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 활동에 사용 하도록 관리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3,000㎡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
- 지원시설용지는 분할이 불가하고 3필지 이내 합병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최초 취득이 불가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

○ 용도별 구역

구 분		계	세부면적				비고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면 적 (㎡)	기정	393,146	238,032	12,319	136,621	6,174	
	변경	391,310.3	237,434.3	12,160.1	134,743.6	6,972.3	
구성비 (%)	기정	100.0	60.6	3.1	34.7	1.6	
	변경	100.0	60.7	3.1	34.4	1.8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별첨1), 용도별 구역 면적표(별첨2)

4.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변경)

구 분		계	세부면적				비고
			공장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기타	
면적	기정	238,032	238,032	-	-	-	
	변경	237,434.3	237,434.3				
구성비		(100.0)	(100.0)	-	-	-	

5.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입주
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
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공공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녹지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6.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기 정]

유치업종	표준산업 중분류	계		비고
		업체수	면적	
합 계		24	237,434.3	
식료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5	24,459.5	
음료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1	43,39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	16,188.5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5	37,04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	66,879.1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	16,734.2	
목재 및 나무제품	(C16)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	8,633.3	
기타 기초 무기화학	(C20) 기타 기초 무기화학	3	24,101.2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 (35114) ^{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목2)에 따른 에너지 발전업	-	-	
	(L68) 부동산업	-	-	

주1)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및 태양력 발전업은 사업구역 내 전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치

※ 분양 및 입주계약 시 필요에 따라 업체수 및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변 경]

유치업종	표준산업 중분류	계		비 고
		업체수	면적	
합 계		22	237,434.3	
식료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5	24,459.5	
음료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1	43,39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	10,481.9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5	37,04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66,879.1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16,734.2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C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	5,706.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8,63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24,101.2	20129 외불가
기타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 급업 중 태양력 발전업(35114) ^{주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에 따른 에너지 발전업	-	-	
	(L68) 부동산업	-	-	

주3) 태양광 에너지 발전업 및 태양력 발전업은 사업구역 내 전지역에 설치되는 업종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배치

※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3

7.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변경)

- 기본방향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 불가
- 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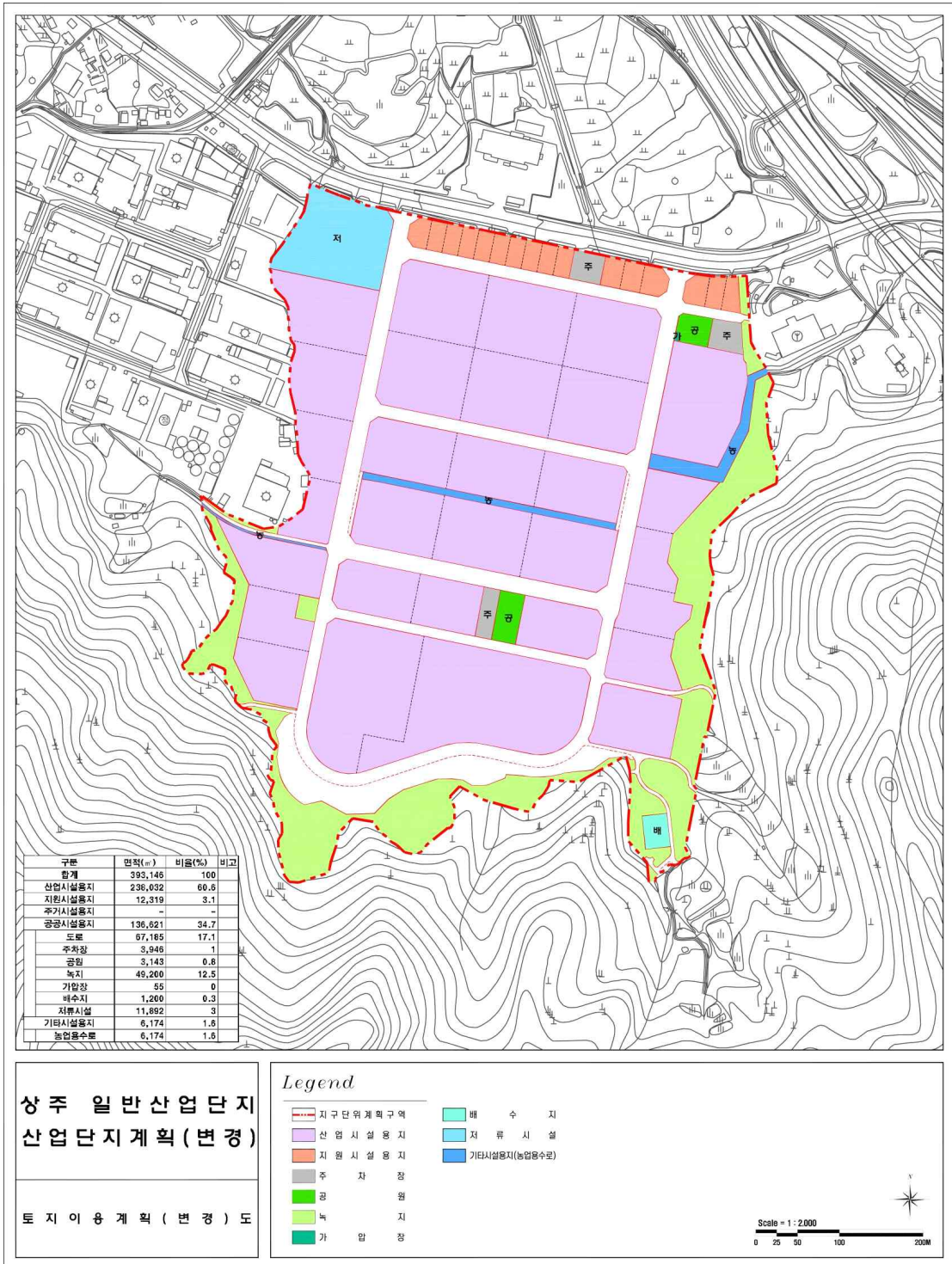
구분	용도	세부용도(시설명)	면적		블록수(업체수)
			기정	변경	
계획	입주계약시 지정한 용도	지원시설	6,174	12,160	16

-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8.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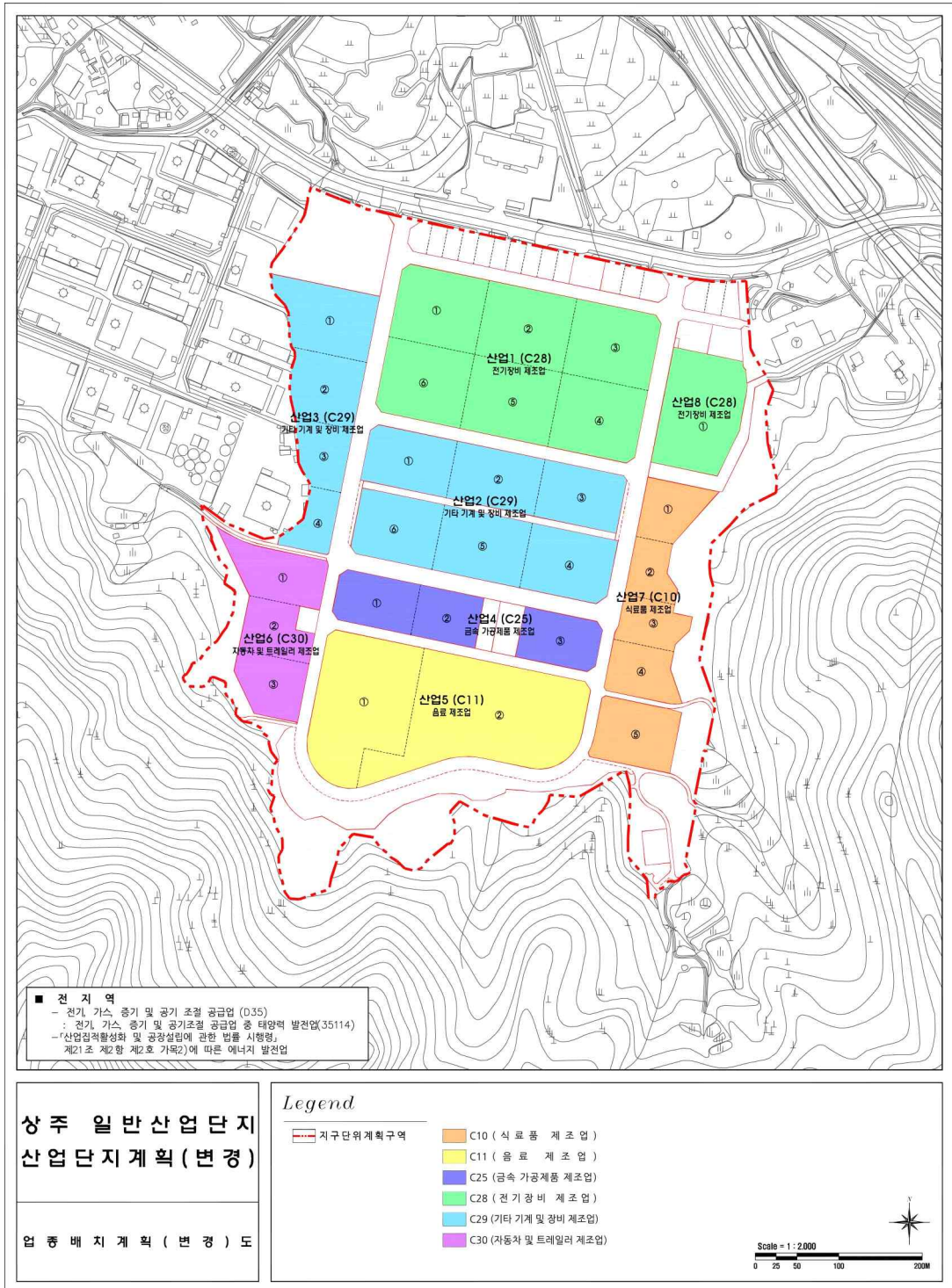
별첨1.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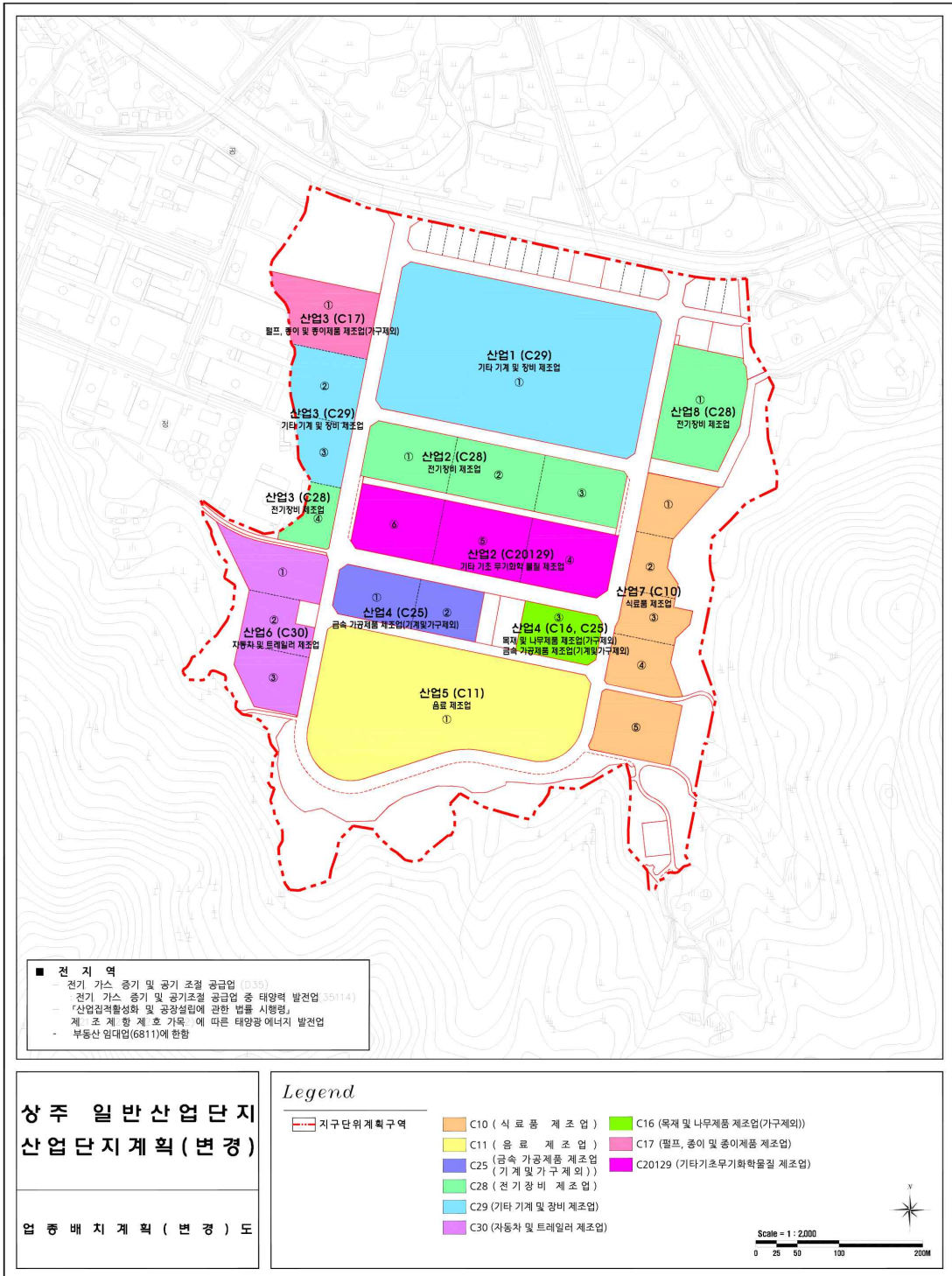
별첨2. 용도별 구역 면적표 (변경)

구 분	계획면적(m ²)		구성비(%)		관리제외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93,146	391,310.3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238,032	237,434.3	60.6	60.7	-	
지원시설용지	12,319	12,160.1	3.1	3.1	-	
공공시설용지	136,621	134,743.6	34.7	34.4	-	
도 로	67,185	65,524.0	17.1	16.7	-	
주 차 장	3,946	3,946.0	1.0	1.0	-	
공 원	3,143	3,143.0	0.8	0.8	-	
녹 지	49,200	48,948.4	12.5	12.5	-	
가 압 장	55	55.0	0.0	0.0	-	
배 수 지	1,200	1,214.4	0.3	0.3	-	
저류시설	11,892	11,912.8	3.0	3.1	-	
기타시설용지	6,174	6,972.3	1.6	1.8	-	
농업용수로	6,174	6,972.3	1.6	1.8	-	

별첨3. 업종별 배치계획도 (기정)



별첨3. 업종별 배치계획도 (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7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 : 「2025년도 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054-850-3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2025년도 산불피해지 산사태예방사업)

시군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사방 종류	비고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합계			158필지		9,490,768	22,148				
안동시			87		4,786,524	14,639				
안동	길안	금곡	산50	임야	944,529	297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미내소일길 138	대한불교 조계종 용담사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길안	대곡	산105	임야	25,388	30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4길 132, 103동202호(신천동,신천청아람)	김달규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현하	산278	임야	40,860	655	경상북도 안동군 임하면 현하동 824	김석규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187	전	1,878	4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5길 92, 105동 608호 (정하동,현진에버빌)	전기조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길안	금곡	188	답	506	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5길 92, 105동 608호 (정하동,현진에버빌)	전기조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592	구거	12,532	230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1호지
안동	길안	금곡	산20-1	임야	67,041	89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159	임종분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20-1	임야	67,041	89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회로 159	천영길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안동	길안	금곡	산22	임야	74,579	5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125, 211동 405호 (파호동,성서삼성명가타운)		강태중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27-1	임야	199,008	14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 113동1603호 (화명동,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이운동	산불 피해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 113동1603호 (화명동,화명동롯데아파트낙천대)		이찬동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28	임야	14,678	87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58, 101동 103호 (방이동,올림픽베어스타운)		이형락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156	구거	1,356	284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96-1	임야	474,744	5,33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80		성장기업 주식회사	산불 피해지	2.3 호지
안동	길안	금곡	산176	구거	463	15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598	도로	331	11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길안	금곡	산9-1	임야	25,785	24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201		진성이씨 길안파종중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금곡	산9-2	임야	13,488	13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목계상리길 30-2		최옥분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주 소			
안동	길안	금곡	산10	임야	48,000	72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국만리길 24-5		전중우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156	하천	321	68	경상북도 안동시 배움길 77, 101동1102호(당북동,센트럴자이)	31-3	우범진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남선	원림	157	임야	813	14	경상북도 안동군 남선면 원림동 85		박주선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1025	구거	1,633	12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산214	구거	331	9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산164	임야	93,907	5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540		권용배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91, 111동803호8층(양재동,우성아파트)		권순탁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산164-1	임야	106,027	2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54 (금사리하이빌102동1208호)		권순경	산불 피해지	
안동	남선	원림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생미길 84		권순박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고상	994	전	1,187	34	경상북도 안동시 호암3길 2-21 (송현동)		서승수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남후	고상	996	답	866	85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993		이준특	산불 피해지	

시군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명	사방 종류	비고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주소			
안동	남후	고상	1290	구거	922	143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고상	산149	임야	114,645	89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38-8, 203동511호(상문동,유성청구타운)		권영중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고상	산249	구거	265	27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25	임야	744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6, 4층 (일원동)		김판식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남후	무릉	26	임야	271	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6, 4층 (일원동)		김판식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1325	구거	585	81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산83	임야	111,471	180	경상북도 안동시 면달길 150(정하동)		정태복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동 71-1		남정철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산84-2	임야	126,446	19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718		권오인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1길 34, 503호(충림아파트)		정명환	산불 피해지	
안동	남후	무릉	산174	구거	860	174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지	구천	산4	임야	29,752	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526번길 28-7, 지층 2호 (세류동)		김상운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구천)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안동	일직	구천	산5	임야	1,190	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19, 101동1108호(내동,그라미아파트)	김병섭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직	송리	산215	구거	2,745	385		전설교통부	산불 피해지	송리	
안동	일직	용각	산112-1	임야	296,848	60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현마을길 42,	증중대표 이인식	산불 피해지	용각	
안동	일직	원호	598-1	대지	344	7	경상북도 안동군 일직면 원호동 598	김운성	산불 피해지	원호	
안동	일직	원호	598-2	대지	393	67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598-2	임종순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직	원호	598-3	대지	592	30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장사리1길 45	권순결	산불 피해지	원호	
안동	일직	원호	산56-1	임야	37,089	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26, 553동1003호 (정자동,백설마을동양고속아파트)	김시찬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직	원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7-9 (읍내동)	장경모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일직	원	576	구거	436	98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직	원	산21	임야	27,769	65	경기도 평택시 점촌1로 9,나동D1호 (서정동,오성맨션)	조성만	산불 피해지		
안동	일직	원	산22	임야	94,413	176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163 산격대우아파트108-910	대표자 남태욱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안동	일직	원	산111	구거	661	67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국	934	구거	6,357	229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임동	박국	산67-3	임야	31,902	147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메사골길 134	정길자	산불 피해지	박국	
안동	임동	박국	산67-4	임야	14,403	20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10, 4806동1301호 (상현동,광고상폐빌파크부)	손경숙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국	산67-12	임야	30,624	75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석2길 7, 1층	정미희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국	산135	구거	165	6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수국	
안동	임동	수국	785	하천	413	142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84-29, 송현청구하이츠102-903	류창석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수국	산76	임야	225,100	154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84-29, 송현청구하이츠102-903	류창석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수국	산77	임야	108,673	72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84-29, 송현청구하이츠102-903	류창석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임동	박국	1610	도로	1,253	150		안동시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국	2402	구거	11,993	57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국	2431	도로	559	26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안동	임동	박곡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94번길 4-19, 201호(산남동)		김시록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곡	산486	임야	79,850	182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367 캐슬골드파크@ 1309-1901		김시조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2, 812동1301호 (영통동,벽적골한신아파트)		김시돈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곡	산490-4	임야	622	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주식회사 오미아 코리아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곡	산881	구거	1,455	168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박곡	산882	구거	1,157	46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동	수곡	산189	임야	4,364	49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73, 201동 1401호 (범어동,범어에스케이부)		류춘기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임동	수곡	산90	임야	170,257	146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29길 61, 111동 402호 (신월동, 신정뉴타운롯데캐슬)		대표자 류재하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고곡	산10-2	임야	144,311	61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71, 872동1102호(산본동,덕유아파트)		송정자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임하	금소	산65	임야	42,843	165	경상북도 구미시 김성로 54-17, 에이동906호(인의동,이화아파트)		조명로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금소	산98-1	구거	4,441	41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안동	임하	신태	184	전	407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7번길 16, 101동 404호 (대우세원빌)		김훈중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임하	신태	산91-1	임야	8,033	3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66길 42 (수성동2가)		김재두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신태	산91-2	임야	293,982	44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134-1 (남문동)		심상완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신태	산120	구거	1,653	167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현하	1140	도로	3,174	10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현하	산47-1	임야	248,640	36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하지길 76		문중대표 김희주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현하	산47-3	임야	836	104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하지길 76		문중대표 김희주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구수	213-1	임야	1,054	16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601		김연호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안동	길안	구수	214	담	298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암로 25, 202동706호(대구본리2단지)		손상호	산불 피해지	길안 구수 926
안동	길안	구수	215-1	전	1,273	21	경상북도 안동시 예일길 20, 202동1402호(정하동,센텀폴로라2차)		이호신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구수	926	구거	11,504	119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안동	길안	구수	산85	임야	27,769	5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16, 102동402호(성수동1가,대우아파트)		김태중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안동	길안	구수	산87	임야	21,818	7	안동시 범상동	이석규	이석규	산불 피해지	임하 추목 산28
안동	길안	구수	산256	구거	2,645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153	전	367	6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91, 102-603(송현동,안동송현양우내안애)	이춘우	이춘우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배움길 77, 106동1605호(당북동,센트럴자이)	강영창	강영창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바드미길 20	김종기	김종기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말구리2길 58 (태화동)	송정환	송정환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산28	임야	76,959	154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306-19, C동 402호(안기동,웅부그린)	유홍식	유홍식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70, 106동904호(옥동,호반베르디움)	이명우	이명우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333, 101동802호(범흥동,안동강변펠리시아)	이상훈	이상훈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경상북도 안동시 합전1길64-6, 3동201호(송현동,주공아파트)	정순이	정순이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09-3 골든벨리지 1-101	이창우	이창우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산30	임야	134,479	43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7길 10, 1111동2703호 (상인동,상인화성파크드림)	이상직	이상직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안동	임하	추목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22, 409동1202호(구암동,칠곡그린빌4단지)		이상근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산271	구거	2,116	511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산227-1	임야	21,917	99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492		경주이씨 평리공파 휘치용종중	산불 피해지	임하 추목 산228
안동	임하	추목	산228	임야	46,810	15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6-67, 3층		김미애	산불 피해지	
안동	임하	추목	산315	구거	1,356	22			국토교통부	산불 피해지	
청송군			18		2,337,529	3,161					
청송	청송	거대	757	구거	1,385	31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거대)
청송	청송	거대	산102	임야	1,159,458	195			청송군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외	산30	임야	29,752	71			청송군	산불 피해지	월외
청송	청송	월외	산31-1	임야	152,906	10			청송군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외	산31-2	임야	3,174	207			청송군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외	산33	임야	147,967	135			청송군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청송	청송	월외	산102	구거	12,300	164		농림축산식품부	산방 종류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교	774	구거	27,177	209		농림수산부	대표 지번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교	산79	임야	317,277	359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928	안동권씨 급시중공파 종중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막	493	도로	3,154	34		건설부	대표 지번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막	494	구거	7,574	450		농림수산부	산불 피해지
청송	청송	월막	산6	임야	176,963	246		경상북도 (교육감)	산불 피해지
청송	파천	관	산95	임야	163,031	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107동 403호 (화곡동,강서힐스테이트)	체회철	대표 지번 (관) 산불 피해지
청송	파천	관	산173	구거	727	24		농림수산부	산불 피해지
청송	파천	지경	543	답	479	15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792-4	김옥자	산불 피해지
청송	파천	지경	544	답	919	26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121	유재복	산불 피해지
청송	파천	지경	557	구거	131,412	462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시군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비고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안동	길안	배방	521	구거	1,874	19		농림축산 식품부	산불 피해지
영양군			53		2,366,715	4,348			
영양	석보	답곡	558	전	1,312	5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666-19	최상열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영양	석보	답곡	564	답	1,418	6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북길 171-4 한성그린빌305호	김봉수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답곡	788	구거	131,896	406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답곡	산137-1	임야	52,894	20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1길3번지	남운모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답곡	산141	임야	241,983	8		영양군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지경	산3-18	임야	9,440	46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4길 206	천형욱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영양	석보	화매	995	전	1,276	4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2동704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A단지)	김희동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영양	석보	화매	996	임야	754	103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2동704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A단지)	김희동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998	전	674	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20, 702호(초전동,일동아파트)	임인호	산불 피해지 1호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영양	석보	화매	1127	구거	47,046	279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173	임야	57,521	166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2동704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A단지)	김희동	김희동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73길 50-7, 107동605호 (수성동4가,수성대림e-편한세상)	김대규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277	구거	1,580	101		농림부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6	답	1,051	5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장포길55번길 13, 2층	이순이	이순이	산불 피해지	2호지
영양	석보	화매	17	답	291	3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장포길55번길 13, 2층	이순이	이순이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9	임야	1,412	1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1095	남중수	남중수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27	전	7,709	2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1095	남중수	남중수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74	구거	18,698	59		농림부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75	도로	321	7		국토부	국토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77	도로	850	9		국토부	국토부	산불 피해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주 소			
영양	석보	화매	산26	임야	17,058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 109, 704동402호 (반석동,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박준수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46	임야	155,901	9		산림청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19	임야	89	6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화매동 1037	남명희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23	전	1,544	1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599, 112동704호 (송정동,푸르지오.캐슬A단지)	김희동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25	답	2,106	5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기암길 48, 2층	조은애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30	답	377	34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화매동 1037	김금득	산불 피해지		3호지
영양	석보	화매	1127	구거	47,046	335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166-1	임야	188,033	60		산림청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166-5	임야	9,917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 101동2408호(부전동,네오포아파트)	박준영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168	임야	3,967	4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9	안계석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68-1	전	3,638	2		환경부	산불 피해지		4호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 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영양	석보	화매	169	전	830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13, 204동 902호 (당감동,태화현대아파트)		신제숙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71	전	403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13, 204동 902호 (당감동,태화현대아파트)		신제숙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73	전	1,421	10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대롱길 18, 101동1508호(상봉동,화인아파트)		신상정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74	전	5,697	26			환경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099	구거	678	101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1100	도로	6,634	10			국토부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81	임야	15,868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174길 50, 103동 1605호 (죽곡협성휴포레)		김대규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83	임야	63,868	35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1-1, 4층 (태화동)		신세영	산불 피해지	
영양	석보	화매	산239	구거	485	189			농림부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병옥	453	답	456	7	대구광역시 남구 매지안길 26-2(대명동)		장양자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영양	임암	병옥	483	구거	344	165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1호지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사방 종류	
영양	임암	평육	산14-1	임야	812,978	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3길 42-6		주식회사 하미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15	임야	185,256	31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3길 42-6		주식회사 하미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42	구거	1,794	61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399	답	132	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20 (사동)		가재국	산불 피해지	2호지
영양	임암	평육	469	구거	15,630	51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9	임야	42,738	1			영양군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10	임야	59,107	351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병육동 116		임한홍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317	구거	76	48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병육리 317		황학이	산불 피해지	대표 지번
영양	임암	평육	469	구거	15,630	124			농수산부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7-2	임야	63,935	65	경상북도 영양군 입월면 무등길 351		김영주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8	임야	22,215	66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한성펜션 206		김동준	산불 피해지	
영양	임암	평육	산9	임야	42,738	232			영양군	산불 피해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8호

지방하천 신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지방하천 신광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오천 오어사 인도교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신광천 일부 구간(오어저수지 구간)의 시설물계획 일부를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변경)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 홍수량 (m ³ /s)	계획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신광천	No.0+000 과업종점	405	370	41.30	41.30	119	119
	No.1+300 고락골세천 합류전	395	355	56.30	56.30	44	44
	... 오어저수지 종점부 ...						
	- 오어저수지 구간 (원호교)	395	355	-	107.69	-	(82)
	- 오어저수지 구간 (세월교)	395	355	-	107.69	-	(40)
	... 오어저수지 시점부 ...						
	No.4+000 오어지 상류	140	140	107.69	107.69	120	120
	No.5+600 향사들세천 합류전	125	125	126.99	126.99	29	29
	No.6+700 세천 합류전	120	120	150.67	150.67	12	12
	No.8+263 과업시점	115	115	201.06	201.06	17	17

※ 주요 변경내용

- 당초 누락된 교량 2개소 추가 반영 (정비계획 : 원호교 → 존치, 세월교 → 재가설)
- () 내서는 교량 지점 계획홍수위(여유고 포함) 기준 저수지 수면 폭을 나타냄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없음)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 지역인 포항시(생태하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포항시 생태하천과(☎054-270-3525)

경상북도 고시 제2025-399호

지방하천 안림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지방하천 안림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고령군에서 추진 중인 「쌍림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림천 일부 구간의 하천공간 관리계획(No.8+200 ~ No.9+100) 및 하천 개수 계획 일부를 변경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변경없음)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변경)

하천명	안 별	구간 (No.)		지구구분		연 장 (m)		비고
		시 점	종 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안림천	좌 안	0+000	1+800	근린친수지구	근린친수지구	1,800	1,800	
		1+800	8+200	복원지구	복원지구	11,685	6,400	
		8+200	9+100		근린친수지구		900	
		9+100	13+485		복원지구		4,385	
	우 안	0+000	1+800	근린친수지구	근린친수지구	1,800	1,800	
		1+800	6+300	복원지구	복원지구	4,500	4,500	
		6+300	7+100	특별보전지구	특별보전지구	800	800	
		7+100	7+800	일반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700	700	
		7+800	13+485	복원지구	복원지구	5,685	5,685	

※ 주요 변경내용

- No.8+200 ~ No.9+100(좌안) 근린친수지구 구성에 따른 하천공간 관리계획 일부 변경
- 고평지구 및 저호지구 추가 계획
 - 고평좌1지구 : No.8+332 ~ No.9+083 (신규, L=798m)
 - 저호좌1지구 : No.8+195 ~ No.9+075 (신규, L=1,088m)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고령군(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수자원관리과(☎054-880-4068), 고령군 건설과(☎054-950-6632)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0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20.

경 상 북 도 지 사

연번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1	지방하천 (아천)	교 량 개 체	〈아천제3교〉 L=30.0m, B=6.0m (영구 193㎡) (일시 6,546㎡)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1115-1번지 일원 (인근 668-1)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26.12.31.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1호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사유 :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 결과 변경분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3.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
연구원 북부지원(☎ 054-850-3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 변경분)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합계			35		6,199,182	1,162					
안동시			4		140,054	92					
안동	예안	삼계	138	임야	281	52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삼계리 124	김상의	사방댐	사방댐	대표지번
안동	예안	삼계	905	구거	4,731	7		농림축산 식품부	사방댐	사방댐	
안동	예안	삼계	산112	임야	132,099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동 64-4 대림아파트3동1307호	김균분	사방댐	사방댐	
안동	예안	삼계	산146	구거	2,943	3		국토교통부	사방댐	사방댐	
청송군			9		3,060,079	321					
청송	현서	무계	825	전	4,701	6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842	이동수	유역관리	유역관리	대표지번 (무계(1))
청송	현서	무계	826	전	3,255	5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722	김용술	유역관리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840	전	2,172	1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34, 210동201호 (다산동,플루리움)	임훈택	유역관리	유역관리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청송	현서	무계	841	전	1,729	9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인의구회지구93블럭2 롯데한남빌306	윤명량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로80, 103동1504호 (하양호반세뫼더퍼스트)	윤성호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865	임야	1,312	1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843	임병규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906	구거	27,656	35		농림부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산54-1	임야	2,980,378	195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316(왕대리 992-8)	농업회사법인 근오농림 주식회사	유역관리	
청송	현서	무계	산54-2	임야	11,901	22		청송군	유역관리	
청송	현서	월정	산59	임야	26,975	35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동 410-20	김영호	사방댐	대표지번
영양군			5		646,620	127				
영양	영양	감천	855	구거	6,050	6		농수산부	사방댐	대표지번
영양	영양	감천	산75-2	임야	525,818	97		산림청	사방댐	
영양	영양	감천	산77	임야	1,190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03번길 70, 1814호 (연산동웰메이드오피스텔)	오현결	사방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영양	영양	감천	산260	구거	595	1		농수산부	사방댐	
영양	임암	산해	산183-1	임야	112,967	2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5-11, 501호(예다움)	류진숙	사방댐	대표지번
예천군			4		1,443,595	191				
예천	용문	원류	474	구거	43,716	4		농림부	사방댐	대표지번
예천	용문	원류	산10-1	임야	1,060,797	151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131	함양박씨 정랑공파중증	사방댐	
예천	지보	민화	785-14	구거	1,330	3		농림수산부	계류보전	대표지번
예천	지보	민화	산64-1	임야	337,752	33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3-21	대표자 정석홍	계류보전	
봉화군			13		908,834	431				
봉화	물야	두문	719-1	전	1,153	2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귀이골길 85-1	구현회	산지사방	대표지번
봉화	물야	두문	산124	임야	28,562	15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귀이골길 85-1	구현회	산지사방	
봉화	법전	어지	산262	구거	930	1		농림축산 식품부	사방댐	대표지번 (석현외1)
봉화	법전	어지	산10-3	임야	53,784	9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02	의성김씨육계 위화장소문증	사방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또는 권리자		성 명	사방종류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주 소			
봉화	법전	어지	산10-1	임야	314,400	136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202	의성김씨육계 위화장소문중	사방댐	사방댐	대표지번
봉화	법전	어지	산10-2	도로	15,967	72			건설교통부	사방댐	
봉화	법전	어지	산10-7	도로	480	3			건설교통부	사방댐	
봉화	재산	현동	16	전	3,464	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53		권경중	유역관리	대표지번
봉화	재산	현동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53		권순익	유역관리	
봉화	재산	현동	35-1	전	2,407	1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40, 401동501호		김두환	유역관리	
봉화	재산	현동	1687	도로	1,114	14			국토교통부	유역관리	
봉화	재산	현동	1688	구거	17,879	15			농림축산 식품부	유역관리	
봉화	재산	현동	산117-1	임야	158,876	72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예봉로 2124, 1동5층507호		이윤혜	유역관리	
봉화	재산	현동	산123-1	임야	309,818	77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111-1		농업회사법인 한국약산당 주식회사	유역관리	

사방지정해제 고시내역 (2025년도 사방사업 시행변경분)

시군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지정현황			해제면 적 (㎡)	잔여면 적 (㎡)	해제사유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방종류				
합계			33필지		5,963,249	8,702			1,175	7,527		
안동시			5필지		220,186	337			153	184		
안동	예안	삼계	138	임야	281	22	2025-03-24(110)	사방림	7	15	계획변경 부분해제	
안동	예안	삼계	905	구거	4,731	102	2025-03-24(110)	사방림	12	90	계획변경 부분해제	
안동	예안	삼계	산112	임야	132,099	99	2025-03-24(110)	사방림	20	79	계획변경 부분해제	
안동	예안	삼계	산113	임야	80,132	108	2025-03-24(110)	사방림	108	-	계획변경 해제	
안동	예안	삼계	산146	구거	2,943	6	2025-03-24(110)	사방림	6	-	계획변경 해제	
문경시			1필지		81,980	148			5	143		
문경		공평	산219-2	임야	81,980	148	2025-05-01(165)	사방림	5	143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군			10필지		3,261,890	3,327			514	2,813		
청송	부남	대전	산125	임야	14,747	343	2025-03-24(110)	계류보전	4	339	계획변경 부분해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지정현황			해제면 적 (㎡)	잔여면 적 (㎡)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방종류				
청송	현동	거성	산24	임야	215,701	429	2025-03-24(110)	사방램	20	409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825	전	4,701	34	2024-10-17(390)	유역관리	25	9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840	전	2,172	29	2024-10-17(390)	유역관리	1	28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841	전	1,729	42	2024-10-17(390)	유역관리	21	21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856	전	1,593	78	2024-10-17(390)	유역관리	30	48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865	임야	1,312	44	2024-10-17(390)	유역관리	22	22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906	구거	27,656	476	2024-10-17(390)	유역관리	82	394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산54-1	임야	2,980,378	1,235	2024-10-17(390)	유역관리	165	1,070	계획변경 부분해제	
청송	현서	무계	산54-2	임야	11,901	617	2024-10-17(390)	유역관리	144	473	계획변경 부분해제	
영양군			3필지		138,843	402			31	371		
영양	석보	삼의	산10	임야	119,802	182	2025-03-24(110)	사방램	12	170	계획변경 부분해제	
영양	영양	감천	산73	임야	17,851	121	2025-03-24(110)	사방램	17	104	계획변경 부분해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지정현황			해제면 적 (㎡)	잔여면 적 (㎡)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방종류				
영양	영양	감천	산77	임야	1,190	99	2025-03-24(110)	사방댐	2	97	계획변경 부분해제	
예천군			4필지		1,444,308	1,775			175	1,600		
예천	용문	원류	109	답	2,043	14	2025-05-26(189)	사방댐	11	3	계획변경 부분해제	
예천	용문	원류	474	구거	43,716	583	2025-05-26(189)	사방댐	52	531	계획변경 부분해제	
예천	용문	원류	산10-1	임야	1,060,797	846	2025-05-26(189)	사방댐	99	747	계획변경 부분해제	
예천	지보	만화	산64-1	임야	337,752	332	2025-03-24(110)	계류보전	13	319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군			10필지		816,042	2,713			297	2,416		
봉화	물야	두문	산124	임야	28,562	107	2025-03-24(110)	산지사방	1	106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16	전	3,464	35	2024-10-21(393)	유역관리	7	28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1687	도로	1,114	311	2024-10-21(393)	유역관리	9	302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1688	구거	17,879	922	2024-10-21(393)	유역관리	22	900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산117-1	임야	158,876	469	2024-10-21(393)	유역관리	128	341	계획변경 부분해제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지정현황			해제면 적 (㎡)	잔여면 적 (㎡)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방종류				
봉화	재산	현동	산123-1	임야	309,818	494	2024-10-21(393)	유역관리	117	377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산129-2	임야	161,321	2	2024-10-21(393)	유역관리	1	1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산134	임야	29,752	10	2024-10-21(393)	유역관리	1	9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재산	현동	산350	구거	510	12	2024-10-21(393)	유역관리	1	11	계획변경 부분해제	
봉화	춘양	석현	산40	임야	104,746	351	2025-03-24(110)	사방댐	10	341	계획변경 부분해제	

경상북도 고시 제2025-402호

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안)

「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1. 지역·지구 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2. 고시내용**

시·군	사 업 명	위 치	고시면적 (㎡)	비고
영덕군	회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영덕군 남정면 회리 658 일원	84,188.3	

3. 관계도서 : 게재생략**4. 지형도면 및 세목조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어촌사업부(전화 : 054-730-5067)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총계						84,188.3	84,188.3						
1	영덕	남정	회리	188-5	답	324.3	324.3	홍성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181,101동 2402호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포항시지부)	근저당	
										농업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포항시지부)	근저당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포항시지부)	근저당	
2	영덕	남정	회리	612	유	3,923	3,923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영덕	남정	회리	648	전	2,007	2,007	이종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 88, 303동 1501호 (효자동,효자웰빙타 운에스케이부3차)				
4	영덕	남정	회리	649	유	3,104	3,10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영덕	남정	회리	650-5	답	314	314	이상경	영덕군 남정면 회동 618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영덕	남정	회리	657	답	517	517	홍성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292-19	손동규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32-22	근저당	
7	영덕	남정	회리	658	유	16,673	16,673	한국농 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	영덕	남정	회리	664	유	2,543	2,543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9	영덕	남정	회리	664-1	유	139	139	한국농 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영덕	남정	회리	673	임	159	159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1	영덕	남정	회리	674	임	1,048	1,048	한국농 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2	영덕	남정	회리	689-1	유	11,986	11,986	국(농림축 산식품부)					
13	영덕	남정	회리	689-2	유	5,213	5,213	국 (환경부)					
14	영덕	남정	회리	712-1 1	도	662	662	국 (건설부)					
15	영덕	남정	회리	산66- 2	유	12,992	12,992	한국농 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영덕	남정	회리	산66-3	임	4,404	4,404	백승진	경상북도 안동시 북주1길 13, 101동 802호 (옥동, 세영아파트)			
17	영덕	남정	회리	산94-3	임	2,394	2,394	정인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161-7			
18	영덕	남정	회리	산95-3	임	1,258	1,258	이삼형	영일군 연일읍 동문동 89			
19	영덕	남정	회리	산96	임	1,983	1,983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0	영덕	남정	회리	산97	임	1,190	1,190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1	영덕	남정	회리	산98-1	유	5,157	5,15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	영덕	남정	회리	산98-2	임	1,488	1,488	이인형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8-2 수명산타워빌아파트 603호			
23	영덕	남정	회리	산102-1	임	1,146	1,146	최억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 108			
24	영덕	남정	회리	산111-2	유	2,579	2,57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5	영덕	남정	회리	산111-3	임	985	985	신홍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3길 9-5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59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따라
경상북도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 제공일자 : 2025. 10. 15.
- 제공받는 기관 : 경상북도경찰청 수사과
- 제공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건수사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2025. 10. 20.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61호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측량업체명 (대표자)	업종	업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
(주)세림엔지니어링 (성이환)	일반측량	04-003111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31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2025.10.15.

경상북도공고 제2025-2065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내용 -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감리업 경북 제2025- 6470000-86-22 -00009호	주식회사 소담이엔지 (649-81-03887)	임건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3길 66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16일.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5-2073호

정보통신공사업자 폐업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폐업 사유	수리일자
540506	주식회사 서호플러스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75-1, 405호(형곡동)	자진 폐업	2025.10.17.

끝.

2025년 10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5-209호

경주 도시계획시설[경주교~철교간 도시계획도로(중1-2)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0-115(2020. 6. 29.)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경 주 시



1. 사업의 위치 (변경없음)

○ 경주시 동천동 70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가. 종 류 : 경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 기 정 : 중로1-2호선

- 변 경 : 경주교~철교간 도시계획도로(중1-2)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변경)

○ 시행면적 : - 기정 : $A = 3,680\text{m}^2$

- 변경 : $A = 3,675\text{m}^2$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국유지 면적 변경

○ 경주교~철교간 도시계획도로(중1-2) 개설공사 : $B = 20.0\text{m}$, $L = 151.0\text{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 명 : 경주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경주시청)

5. 사업기간 (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7년 6월 30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지 참조

7. 관계도서는 경주시 도로과(☎054-779-64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	대	202	기정55 변경49	국	기획재정부				
2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69	도	553	67	국	국토교통부				
3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44	도	3	3	박*수					
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70	대	423	22	국	기획재정부				
5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0	천	215	186	국	국토교통부				
6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3	천	126	107	국	국토교통부				
7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7	천	2,066	110	국	국토교통부				
8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9	천	145	기정134 변경135	국	기획재정부				
9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303	대	35	35	공	경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0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0	대	115	115	공	경주시				
11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86	제	258	246	국	국토교통부				
12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08	대	20	19	공	경주시				
13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38	대	30	30	공	경주시				
1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83	대	66	66	공	경주시				
15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37	대	36	36	공	경주시				
16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11	대	79	79	공	경주시				
17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2	대	150	150	공	경주시				
18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3	대	63	63	공	경주시				
19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4	대	25	25	공	경주시				
20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5	대	29	29	공	경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1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18	대	99	99	공	경주시				
22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6	대	34	34	박*근 (지분 2/1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	경주세 무서		압류	
								**** 공업주 식회사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	가압류	
								경주시		압류	
23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19	대	99	99	공	경주시	국민건 강보험 공단경 주지사		압류	
2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57	대	32	32	공	경주시				
25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20	대	69	69	공	경주시				
26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21	대	109	109	공	경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27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4	전	122	6	국	국토교통부				
28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1	철	2,169	315	국	국토교통부				
29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9	철	136	3	국	국토교통부				
30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33-1	천	262,885	161	국	국토교통부				
31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33-1644	제	145	64	국	국토교통부				
32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21	천	268	268	국	국토교통부				
33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4	천	357	357	국	국토교통부				
34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04-187	제	554	487	국	국토교통부				

297mm×210mm [백상지] 80g/㎡]

경주시 고시 제2025-213호

경주 외동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일원 외동2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용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용도변경
 - 공원 → 주차장
 - 공원 → 지원시설

2. 사업시행자의 성명(금회사업부지)

- 업체명 : 경주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금회사업부지)

- 준공된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하여 남경주 국민 체육 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금회사업부지)

- 위 치 :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916번지, 916-1번지

- 면 적 : 602,934.9㎡ (금회사업부지 : 28,450.1㎡)

지원시설용지 면적 증가 : 21,239.3㎡ → 31,239.3㎡ (증 10,000.0㎡)

주차장 면적 증가 : 4,000.0㎡ → 4,553.6㎡ (증 553.6㎡)

공원 면적 감소 : 24,450.1㎡ → 13,896.5㎡ (감 10,553.6㎡)

5. 사업시행기간(금회사업부지)

- 시행기간 : 2003. 12. 08. ~ 실시계획 승인 시

(금회 : 2025. 06. ~ 실시계획 승인 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세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02,934.9	602,934.9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11,941.8	411,941.8	68.3	68.3	
	1차금속(24)	30,228.3	30,228.3	5.0	5.0	
	금속가공제품(25)	22,731.8	22,731.8	3.8	3.8	
	기타 기계 및 장비(29)	75,545.0	75,545.0	12.5	12.5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267,283.1	267,283.1	44.3	44.3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	16,153.6	16,153.6	2.7	2.7	
지 원 시 설 용 지		21,239.3	31,239.3	3.5	5.1	증) 10,000.0㎡
	공 공 시 설 용 지	169,753.8	159,753.8	28.2	26.6	감) 10,000.0㎡
	공원	24,450.1	13,896.5	4.0	2.4	감) 10,553.6㎡
	녹지	62,794.0	62,794.0	10.5	10.5	
	유수지	9,780.6	9,780.6	1.6	1.6	
	주차장	4,000.0	4,553.6	0.7	0.7	증) 553.6㎡
	공공공지	1,896.1	1,896.1	0.3	0.3	
	도로	66,833.0	66,833.0	11.1	11.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 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4,071	66,833.0	3	848	11,364.4	9	2,682	50,494.0	5	541	4,974.6
대로	1	780	21,957.9	-	-	-	1	780	21,957.9	-	-	-
중로	9	2,212	35,146.6	1	215	4,364.5	6	1,705	26,878.9	2	292	3,903.2
소로	7	1,079	9,728.5	2	633	6,999.9	2	197	1,657.2	3	249	1,071.4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면적 (㎡)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5	11	국지 도로	중로 3-19 (문산 산98-1)	중로 2-13 (문산 산76-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5,098.3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중로3-20 (문산 775)	중로3-20 (문산 636)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901.6
기정	소로	2	109	8~9.5	국지 도로	중로 2-13 (문산 965)	문산 925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081.2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중로2-16 (문산 957)	문산 907	일반도 로	외동2지방산 업단지	경주시고시 2017-138	576.0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중로 2-12 (문산 589-6)	지구계 (문산 589-6)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849.8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중로 2-12 (문산 589-6)	동측구역계 (문산589-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05.5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중로 2-12 (문산 산74-24)	제 실 (문산산74-2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10-9	116.1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00.0	증) 553.6	4,553.6		
변경	1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916-1 일원	4,000.0	증) 553.6	4,553.6	경북고시 제2006-2호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문산 공원	근린 공원	외동읍 문산리 916	24,450.1	감) 10,553.6	13,896.5	경북고시 2006-2	
					24,450.1	감) 10,553.6	13,896.5		

나)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2,794.0	-	62,794.0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문산리 674 (대로2-3호선변)	10,565.1	-	10,565.1	경주시고시 1996-89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문산리 464-3 (북측구역계변)	13,756.0	-	13,756.0	경북고시 2006-2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문산리 74-19 (대로2-3호선변)	6,235.9	-	6,235.9	경북고시 2006-2	
기정	10	녹지	완충 녹지	문산리 산99-5 (남측구역계변)	29,113.1	-	29,113.1	경북고시 2006-2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문산리 664 (공동묘지변)	3,123.9	-	3,123.9	경북고시 2006-2	

다)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1,896.1	-	1,896.1		
기정	2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667-2	582.1	-	582.1	경북고시 2006-2	
기정	3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725-5	209.4	-	209.4	경북고시 2006-2	
기정	4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737	374.3	-	374.3	경북고시 2006-2	
기정	5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679-2	215.8	-	215.8	경북고시 2006-2	
기정	6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639-2	126.1	-	126.1	경북고시 2006-2	
기정	7	공공 공지	외동읍 문산리 773	388.4	-	388.4	경북고시 2006-2	

3) 방제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780.6	-	9,780.6		
기정	1	저류 시설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641-4	6,266.7	-	6,266.7	경북고시 2006-2	
기정	2	저류 시설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75-1	3,513.9	-	3,513.9	경북고시 2006-2	

다. 용도지역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기반시설계획도(변경) : 계제생략

라.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수 수요량(m ³ /일)	비 고
계	1,255.0	
공업용수	975.8	
생활용수	279.2	

마.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발생 오·폐수는 433.5m³/일이며 외동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Q=8,000m³/일)가 준공되어 처리 중

구 분	오·폐수 발생량(m ³ /일)	비 고
계	433.5	
생활오수	157.0	
공장폐수	276.5	

바.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단지 내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구 분	폐기물 발생량(kg/일)	비 고
계	19,253.4	
일반폐기물	18,421.9	
지정폐기물	831.5	

사.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주) 경주지점에서 공급

구 분	전력수요량(KVA)	비 고
계	93,306	
산업시설	89,903	
기타시설	3,403	

아.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수요량(KVA)		비 고
	기정	변경	
계	1,422	1,461	
생산시설	1,030	1,030	
지원시설	64	94	
기타	328	337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일반공업지역	602,934.9	-	602,934.9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외동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동읍 문산리 산75-2번지 일원	602,934.9	-	602,934.9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없음)

(가) 도로계획총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4,071	66,833.0	3	848	11,364.4	9	2,682	50,494.0	5	541	4,974.6
대로	1	780	21,957.9	-	-	-	1	780	21,957.9	-	-	-
중로	9	2,212	35,146.6	1	215	4,364.5	6	1,705	26,878.9	2	292	3,903.2
소로	7	1,079	9,728.5	2	633	6,999.9	2	197	1,657.2	3	249	1,071.4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면적 (㎡)
	등급	류별	번호									
	소계				17개 노선	4,071						66,833.0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도로	780	서측구역계 (문산 산76-1)	동측구역계 (문산646-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주시고시 1996-89	21,957.9
기정	중로	1	15	20	집산 도로	215	대로 2-5 (문산 산67)	중로 2-11 (문산 산68-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4,364.5
기정	중로	2	11	15	집산 도로	440	대로 2-3 (문산 671)	중로 1-15 (문산 산68-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6,809.0
기정	중로	2	12	15	집산 도로	487	대로 2-3 (문산 산75-2)	중로 2-11 (문산산74-2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7,590.2
기정	중로	2	13	15	집산 도로	510	대로 2-3 (문산 산76-1)	중로 1-7 (문산 산81-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7,857.4
기정	중로	2	14	15	집산 도로	110	대로 2-3 (문산 641)	소로 1-25 (문산 639-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1,891.1
기정	중로	2	15	15	집산 도로	103	중로 1-7 (문산 776-2)	중로 3-20 (문산 775)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6-2	1,681.2
기정	중로	2	16	18	집산 도로	55	중로 1-15 (문산 산68-1)	문산 50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10-9	1,050.0
기정	중로	3	19	12	집산 도로	103	중로 1-7 (문산864-145)	소로 1-25 (문산 산98-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365.5
기정	중로	3	20	12	집산 도로	189	중로 3-19 (문산 638)	중로 2-15 (문산 775)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2,537.7
기정	소로	1	25	11	국지 도로	449	중로 3-19 (문산 산98-1)	중로 2-13 (문산 산76-1)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5,098.3
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184	중로3-20 (문산 775)	중로3-20 (문산 636)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901.6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면적 (㎡)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9	8~9.5	국지 도로	131	중로 2-13 (문산 965)	문산 925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081.2
기정	소로	2	110	8	국지 도로	66	중로2-16 (문산 957))	문산 907	일반도 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주시고시 2017-138	576.0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01	중로 2-12 (문산 589-6)	지구계 (문산 589-6)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849.8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19	중로 2-12 (문산 589-6)	동측구역계 (문산589-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08-418	105.5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29	중로 2-12 (문산 산74-24)	제 실 (문산산74-24)	일반 도로	외동2지방 산업단지	경북고시 2010-9	116.1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00.0	증) 553.6	4,553.6		
변경	1	노외주차장	외동읍 문산리 916-1 일원	4,000.0	증) 553.6	4,553.6	경북고시 제2006-2호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노외주차장	· 면적 및 위치 변경 - 외동읍 문산리 916 → 외동읍 문산리 916-1일원 - A = 4,000.0㎡ → 4,553.6㎡ 증) 553.6㎡	·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에 남경주 국민 체육센터(수영장) 건립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적 분할로 위치 및 주차장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5개소			62,794.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문산리 674 (대로2-3호선변)	10,565.1	경주시 고시 1996-8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문산리 464-3 (북측구역계면)	13,756.0	경북고시 2006-2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문산리 74-19 (대로2-3호선변)	6,235.9	경북고시 2006-2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문산리 산99-5 (남측구역계면)	29,113.1	경북고시 2006-2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문산리 664 (공동묘지변)	3,123.9	경북고시 2006-2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계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8	문산공원	근린공원	외동읍 문산리 916	24,450.1	감) 10,553.6	13,896.5		
					24,450.1	감) 10,553.6	13,896.5	경북고시2006-2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노외주차장	· 면적 축소 외동읍 문산리 A = 24,450.1㎡ → 13,896.5㎡ 감) 10,553.6㎡	· 외동2일반산업단지 내에 남경주 국민 체육센터(수영장) 건립을 위한 공원면적 축소

(3)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계		6개소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667-2	1,896.1	-	1,896.1		
기정	3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725-5	582.1	-	582.1	경북고시2006-2	
기정	4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737	209.4	-	209.4	경북고시2006-2	
기정	5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679-2	374.3	-	374.3	경북고시2006-2	
기정	6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639-2	215.8	-	215.8	경북고시2006-2	
기정	7	공공공지	외동읍 문산리 773	126.1	-	126.1	경북고시2006-2	
				388.4	-	388.4	경북고시2006-2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9,780.6	-	9,780.6		
기정	1	저류시설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641-4	6,266.7	-	6,266.7	경북고시 2006-2	
기정	2	저류시설	유수지	외동읍 문산리 산75-1	3,513.9	-	3,513.9	경북고시 2006-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번호	획지면적(㎡)	위 치	비 고
합계		411,941.8		411,941.8		
1		89,217.3	①	15,020.6	외동읍 문산리 907번지	
			②	11,954.2	외동읍 문산리 906-1번지	
			③	9,266.8	외동읍 문산리 906번지	
			④	16,813.0	외동읍 문산리 907-1번지	
			⑤	18,687.1	외동읍 문산리 908번지	
			⑥	17,475.6	외동읍 문산리 909번지	
2		80,567.3	①	44,147.2	외동읍 문산리 910번지	
			②	15,110.2	외동읍 문산리 911번지	
			③	11,152.8	외동읍 문산리 912번지 외1	
			④	10,157.1	외동읍 문산리 912-1번지	
3		31,606.3	①	9,692.6	외동읍 문산리 913번지	
			②	11,063.3	외동읍 문산리 914번지	
			③	10,850.4	외동읍 문산리 915번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m ²)	획지번호	획지면적(m ²)	위 치	비 고
산업 시설 용지	4	11,219.6	①	7,069.3	외동읍 문산리 918번지	
			②	4,150.3	외동읍 문산리 919번지 일원	
	5	59,570.3	①	15,027.5	외동읍 문산리 923번지	
			②	15,588.0	외동읍 문산리 924번지	
			③	5,773.1	외동읍 문산리 926번지	
			④	8,296.1	외동읍 문산리 927번지	
			⑤	8,252.0	외동읍 문산리 928번지	
			⑥	6,633.6	외동읍 문산리 925번지	
	6	25,518.2	①	8,394.0	외동읍 문산리 929번지	
			②	4,192.3	외동읍 문산리 929-1번지	
			③	12,931.9	외동읍 문산리 930번지	
	7	11,881.4	①	5,896.2	외동읍 문산리 931번지	
			②	5,985.2	외동읍 문산리 932번지	
	8	72,133.1	①	7,610.0	외동읍 문산리 937번지	
			②	7,611.0	외동읍 문산리 938번지	
			③	5,194.4	외동읍 문산리 939번지	
			④	4,103.9	외동읍 문산리 940번지	
			⑤	13,160.7	외동읍 문산리 936번지	
	9	30,228.3	⑥	24,933.1	외동읍 문산리 935번지	
			⑦	9,520.0	외동읍 문산리 934번지	
			①	11,565.8	외동읍 문산리 944번지	
			②	18,662.5	외동읍 문산리 945번지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번호	획지면적(㎡)	위 치	비 고
합계	합계	21,239.3		21,239.3		기정
	합계	31,239.3		31,239.3		변경
지원 시설 용지	1	771.8	①	771.8	외동읍 문산리 921번지	
	2	3,624.3	①	1,057.7	외동읍 문산리 941번지	
			②	1,057.9	외동읍 문산리 942번지	
			③	1,508.7	외동읍 문산리 943번지	
			①	946.9	외동읍 문산리 946번지	
	3	10,593.7	②	1,014.0	외동읍 문산리 947번지	
			③	1,805.5	외동읍 문산리 948번지	
			④	610.9	외동읍 문산리 949번지	
			⑤	600.3	외동읍 문산리 950번지	
			⑥	585.4	외동읍 문산리 951번지	
			⑦	568.8	외동읍 문산리 952번지	
			⑧	2,054.1	외동읍 문산리 953번지	
			⑨	1,319.7	외동읍 문산리 954번지	
			⑩	272.0	외동읍 문산리 955번지	
			⑪	272.0	외동읍 문산리 955-2번지	
			⑫	272.1	외동읍 문산리 955-3번지	
			⑬	272.0	외동읍 문산리 955-1번지	
	4	2,586.9	①	2,586.9	외동읍 문산리 925번지	
	5	3,662.6	①	3,662.6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	
	6	10,000.0	①	10,000.0	외동읍 문산리 916-1번지	신설

다)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번호	획지면적(㎡)	위 치	비 고
합계		4,000.0		4,000.0		기정
합계		4,553.6		4,553.6		변경
기타 시설용지	1	4,000.0	①	4,000.0	외동읍 문산리 916번지	노외 주차장
	1	4,553.6	①	4,553.6	외동읍 문산리 916-1번지	노외 주차장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9	외동2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용 도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320%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배치	
		형 태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지원1 ~ 지원5	외동2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용 도	허용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 80% 이하 ○ 320% 이하 ○ 최고높이 : 4층 이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배치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변경 지원1 ~ 지원6			

다)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타1	외동2일반 산업단지 내 노외주차장용지	용 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 이하
		용적률	○ 5%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1층 이하
		배 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배치
		형 태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9. 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054-779-62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영주시 고시 제2025-162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54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영주시 고시 제2022-61호(개발계획 변경), 영주시 고시 제2025-78호(실시계획 변경)로 고시된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영 주 시 장



I.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나. 면적 : 32,672㎡ → 32,736㎡, 증) 64㎡(현황도로 제척, 녹지 및 도로
경사면 편입)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가. 다가구주택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사업대상지 일원은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 우려와 보강토옹벽으로 도시경관 및 도시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
하고 있어

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강남교보타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공고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672	증) 64	32,736	100.0	
주 거 용 지		19,767	-	19,767	60.4	
	공동주택용지	19,767	-	19,767	60.4	
도시기반시설용지		12,905	증) 64	12,969	39.6	
	도 로	1,946	증) 77	2,023	6.2	
	주 차 장	1,353	-	1,353	4.1	2개소
	공 공 공 지	52	감) 52	-	-	도로 편입
	공 원	4,745	-	4,745	14.5	2개소
	녹 지	3,975	증) 39	4,014	12.3	3개소
	보 행 자 도 로	834	-	834	2.5	
구역외 도로		89	증) 419	508	-	중로2-31호선
		-	증) 278	278	-	소로1-41호선
		573	증) 2,467	3,040	-	중로2-20호선
		-	증) 95	95	-	소로1-39호선
		1,140	감) 170	970	-	소로1-휴1호선

7.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사업지 동측 도로 보도설치 및 노면포장

구 분		위 치	시 설 규 모	비 고
기정	보도	사업지 동측 소로1-41호선	· 연장 : 30m, 폭원 : 2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중로2-20호선	· 연장 : 160m, 폭원 : 2m	시 행 자 비용부담
변경	보도 및 노면포 장	사업지 동측 중로2-31호선	· 연장 : 38m, 폭원 : 15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소로1-41호선	· 연장 : 28m, 폭원 : 10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중로2-20호선	· 연장 : 200m, 폭원 : 15m	시 행 자 비용부담
		사업지 동측 소로1-39호선	· 연장 : 8m, 폭원 : 10m	시 행 자 비용부담

나. 사업지 서측 도로 노면포장(가각부 변경)

구 분		위 치	시 설 규 모	비 고
기정	도로설치	사업지 서측 소로1-A호선	· 연장 : 156m, 폭원 : 6m	시 행 자 비용부담
변경	노면포장	사업지 서측 소로1-휴1호선 (노선번호 반영)	· 연장 : 156m, 폭원 : 6m	시 행 자 비용부담

9. 법 제11조 제8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과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람

나. 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054-639-6672)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32,672	증) 64	32,736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 면적 증가 32,672㎡ → 32,736㎡ 증) 64㎡	• 현황도로 제척 및 도로·녹지 경사면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변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⑪	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32,672	증) 64	32,73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변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⑪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 면적 증가 32,672㎡ → 32,736㎡ 증) 64㎡	• 현황도로 제척 및 도로·녹지 경사면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

II.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 면 적 : 32,672㎡ → 32,736㎡, 증) 64㎡

4. 시행자 (변경없음)

- 시행자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서초동, 강남교보타워)

5. 시행기간 (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

6. 시행방식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붙임 2]**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열람기간 : 시민열람과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장소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공람

나. 장소 : 영주시청 도시과(☎ 054-639-6672)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게재생략

[붙임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휴천동	1	전	813	813	-	8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2	휴천동	2	대	433	433	-	4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3	휴천동	158-1	대	714	714	-	7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4	휴천동	160	대	770	770	-	77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5	휴천동	161-1	전	648	85	-	8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6	휴천동	1169	전	1,302	1,302	-	1,3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7	휴천동	1169-1	임	7,348	7,348	-	7,34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8	휴천동	산1-1	임	9,755	9,458	증) 10	9,46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9	휴천동	산1-3	임	9,830	9,779	-	9,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0	휴천동	산1-5	임	238	238	-	23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1	휴천동	산1-6	임	1,243	1,051	감) 16	1,0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2	휴천동	산2-3	임	1,170	-	증) 70	70	-	남간서당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3, 809호	(주)에스제 이산업개 발	
13	휴천동	산2-10	임	387	387	-	3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4	하망동	420-18	임	200	200	-	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15	하망동	524-7	도	28	21	-	21	-	영주시	
16	하망동	524-24	임	73	73	-	7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 신탁(주)	
계	16필지			34,952	32,672	증) 64	32,736			

[붙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752	-	32,75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0	감) 64	16	0.1	구역 외 16m ²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51	-	20,051	61.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621	증) 64	12,685	38.7	

주) 구역 외 면적 16m²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되는 면적이며, 「도시개발법」제10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면적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①	휴천동 산1-6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6	200% 이하	• 현황도로 반영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함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
②	휴천동 산2-3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80	100% 이하	• 도로·녹지 경사면 도시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주시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32,672	증) 64	32,736	경고 제2020-454호 (2020.12.17.)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변 경 사 유
변경	⑪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 면적 증가 32,672m ² → 32,736m ² (증) 64m ²	• 현황도로 제척 및 도로·녹지 경사면 편입에 따른 구역계 변경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0	15~18 (3)	국 지 도 로	288 (84)	중로2-2	소로1-41	일반 도로	-	영고 제23호 (2001.1.20)	
기정	중로	2	A	15	국 지 도 로	64	소로1-41	휴천동 산1-3	일반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중로	2	A	15	국 지 도 로	60	소로1-41	휴천동 산1-3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2	31	15 (4)	국 지 도 로	233 (17)	소로1-70	소로1-41	일반 도로	-	-	노선 분리
기정	소로	1	A	10 (4)	국 지 도 로	156 (140)	중로2-2	휴천동 722	일반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소로	1	휴1	10 (4)	국 지 도 로	156 (140)	중로2-2	소로3-96	일반 도로	-	-	노선 번호 반영
기정	소로	3	B	4~5	특 수 도 로	172	중로2-A	소로3-A	보행자 전용 도로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주 : () 안은 구역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2-A	중로2-A	• 연장축소 - L = 64m → 60m, 감) 4m	• 중로2-31호선 노선 분리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2-31	• 중로2-31호선 반영(노선분리) - B = 4m, L = 17m	• 중로2-31호선 노선 반영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1-A	소로1-휴1	• 노선번호 반영, 경사면 등 편입 - B = 4m → 5.3~8m, 증) 1.3~4m, L = 32m	• 노선번호 반영, 도로 경사면 및 공공공지 편입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㉔	주차장	노외 주차장	휴천동 산1-3번지 일원	651	-	651	영고 제2022-22호 (2022.3.14.)	
기정	㉕	주차장	노외 주차장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702	-	702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A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휴천동 160번지 일원	3,691	-	3,691	영고 제2022-22호 (2022.3.14.)	
기정	㉖	제1호 소공원	소공원	휴천동 1169번지 일원	1,054	-	1,054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1169-1번지 일원	723	-	723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③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산1-3번지 일원	2,524	증) 55	2,579	영고 제2022-22호 (2022.3.14.)	
변경	④	녹지	경관 녹지	휴천동 산1-1번지 일원	728	감) 16	712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녹지	• 녹지 확장 - A = 2,524㎡ → 2,579㎡ 증) 55㎡	• 경사면 편입에 따른 녹지 확장
④	녹지	• 녹지 축소 - A = 728㎡ → 712㎡ 감) 16㎡	•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녹지 축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④	공공공지	휴천동 158-1번지 일원	52	감) 52	-	영고 제2022-22호 (2022.3.14.)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A = 52㎡ → 0㎡ 감) 52㎡	• 도로 편입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계	-	-	-	19,767	
BL 1	BL 1	19,767	휴천동 2번지 일원	19,767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L 1	BL 1	용 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1층 이하(필로티 제외)
		배 치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 태	•전체적인 형태 및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
		색 채	•주변 경관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선	-

4)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제1호 어린이공원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면 적 (㎡)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691.00	1,803.93	-	-	23
기반시설	457.30	457.30	-	-	
도 로	184.47	184.47	-	-	
광 장	272.83	272.83	-	-	
조경시설	8.00	8.00	-	-	
휴양시설	66.35	66.35	-	-	4
유희시설	1,107.53	1,107.53	-	-	12
운동시설	164.75	164.75	-	-	7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	-	-	-	
기타시설	-	-	-	-	
녹지 및 기타	1,887.07	-	-	-	

□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3,691.00	1,803.93	-	-	23	
시설 소계			1,803.93	1,803.93	-	-	23	
기 반 시 설	소계		457.30	457.30	-	-		
	도로		184.47	184.47	-	-		
	광장	가	226.00	226.00	-	-		
		나	46.83	46.83	-	-		
휴 양 시 설	소계		66.35	66.35	-	-	4	
	휴양공간	다	66.35	66.35	-	-		
	쉐이드파고라	①	-	-	-	-	1	
	아트벤치	②	-	-	-	-	1	
	스윙벤치	③	-	-	-	-	2	
조 경 시 설	소계		8.00	8.00	-	-		
	앉음벽	라	8.00	800	-	-		20.00m
	안전난간	마	-	-	-	-		260.5m
유희 시 설	소계		1,107.53	1,107.53	-	-	12	
	어린이놀이터	바	1,107.53	1,107.53	-	-		
	조합놀이대	④	-	-	-	-	1	
	마운딩슬라이드	⑤	-	-	-	-	1	
	짚라인	⑥	-	-	-	-	1	
	회전놀이대	⑦	-	-	-	-	1	
	나뭇잎통과하기	⑧	-	-	-	-	1	
	오색회전놀이대	⑨	-	-	-	-	1	
	나무시소	⑩	-	-	-	-	2	
	흔들놀이대	⑪	-	-	-	-	2	
	티하우스	⑫	-	-	-	-	1	
	티테이블	⑬	-	-	-	-	1	
운 동 시 설	소계		164.75	164.75	-	-	7	
	운동공간	사	164.75	164.75	-	-		
	어린이운동기구	⑭	-	-	-	-	3	
	생활체육시설	⑮	-	-	-	-	4	
녹지 및 기타시설	소계		1,887.07	-	-	-		
	녹지 및 기타	아	1,887.07	-	-	-		

□ 도로 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55.75	184.47				
산책로	소 계			55.75	184.47				
	산	1	5.2	3.70	18.43	진입로	보행자도로	어린이공원	
		2	3.0	35.00	106.02	산책로	진입계단	어린이공원	
		3	6.3	1.85	11.65	산책로	외부주차장	어린이공원	
		4	3.0	13.2	39.60	산책로	상부광장	하부광장	
		5	4.3	2.00	8.77	산책로	단지외부	어린이공원	

나. 제1호 소공원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면 적 (㎡)		공작물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054.00	174.16	-	-	6
기반시설		122.14	122.14	-	-	
	도 로	88.51	88.51	-	-	
	광 장	33.63	33.63	-	-	
조경시설		14.04	14.04	-	-	
휴양시설		-	-	-	-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37.98	37.98	-	-	4
교양시설		-	-	-	-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	-	-	-	
기타시설		-	-	-	-	
녹지 및 기타		879.84	-	-	-	2

□ 세부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054.00	174.16	-	-	6	
시설 소계			174.16	174.16	-	-	6	
기반 시설	소계		122.14	122.14	-	-		
	도로		88.51	88.51	-	-		
	광장	가	33.63	33.63				
조경 시설	소계		14.04	14.04	-	-		
	앞음벽	나	5.29	5.29	-	-		
	디딤석	다	8.75	8.75	-	-		
운동 시설	소계		37.98	37.98	-	-		
	운동공간	라	37.98	37.98	-	-		
	생활체육시설	①	-	-	-	-	4	
녹지 및 기타시 설	소계		879.84	-	-	-		
	녹지 및 기타	마	879.84	-	-	-		
	평의자	②	-	-	-	-	2	

□ 도로 결정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31.95	88.51				
산책로	소 계			31.95	88.51				
	산	1	3.0	19.72	70.98	진입로	중로2-10	공동주택	
		2	1.2	12.23	17.53	산책로	산책로-1	운동공간	

고령군 고시 제2025-1464호

열피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피일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령군수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열피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다. 면 적 : 220,688㎡ → 220,552㎡(감 136㎡)

※ 변경사유 : 사업대상지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홈센타 홀딩스 계열사 유치를 통한 통합관리로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 인근지역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군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다. 토석채취개발에 의한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나. 시행자 : 실수요자 기업대표 (주)보광홀딩스 대표이사 박병운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4년 승인일로부터 ~ 2026. 12. 31.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나’목에 의한 실수요자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매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전기장비 제조업(C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나. 업종별 배치계획

유 치 업 종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계	124,549	100.0	119,382	100.0	
비금속광물제조업	60,191	48.3	57,905	48.5	
전기장비제조업	23,731	19.1	15,980	13.4	
물류시설	40,627	32.6	45,497	38.1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0,688	-	220,688	100.0	
일반공업지역	220,688	감) 136	220,552	99.9	
계획관리지역	-	증) 136	136	0.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20,552	350% 이하	■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계획관리지역	136	100% 이하	■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열외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일원	220,688	감) 136	220,55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1	고령군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일원	220,552	■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220,688	100.0	220,552	100.0	감) 136	
산업시설용지	124,549	56.4	119,382	54.1	감) 5,167	
지원시설용지	4,589	2.1	4,589	2.1		
공공시설용지	91,550	41.5	96,581	43.8	증) 5,031	
공원	3,023	1.4	3,023	1.4		
녹지	55,891	25.3	59,129	26.8	증) 3,238	
주차장	1,689	0.8	1,689	0.8		
도로	25,507	11.5	27,217	12.3	증) 1,710	
공급처리시설	5,440	2.5	5,523	2.5	증) 83	
오·폐수처리시설	1,484	0.7	1,484	0.7		
배수지	903	0.4	986	0.4	증) 83	
저류지	3,053	1.4	3,053	1.4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2,051	25,507	-	-	-	5	2,051	25,507	-	-	-
	변경	5	2,170	27,217	-	-	-	5	2,170	27,217	-	-	-
중로	기정	4	1,612	25,653	-	-	-	4	1,612	25,653	-	-	-
	변경	4	1,731	24,886	-	-	-	4	1,731	24,886	-	-	-
소로	기정	1	439	2,346	-	-	-	1	439	2,346	-	-	-
	변경	1	439	2,331	-	-	-	1	439	2,331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열1	15	집산 도로	351	소로 2-69 개진면 직리	중로 2-열4 개진면 직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기정	중로	2	열2	15	집산 도로	243	중로 2-열1 개진면 직리	중로 2-열1 개진면 직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중로	2	열2	15	집산 도로	243	중로2-열1 개진면 직리	중로2-열4 개진면 직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기정	중로	2	열3	15	집산 도로	243	중로 2-열1 개진면 직리	중로 2-열1 개진면 직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중로	2	열3	15	집산 도로	283	중로2-열1 개진면 직리	중로2-열4 개진면 직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기정	중로	2	열4	15	집산 도로	775	소로 2-69 개진면 직리	중로 2-국지67B 개진면 신안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중로	2	열4	15	집산 도로	854	소로2-69 개진면 직리	중로 2-국지67C 개진면 신안리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기정	소로	2	69	8~15	보조 간선 도로	2,010 (439)	개포리 472-3	직리 269-4	일반 도로		고령군 고시 제2011-18호 (2011.01.17)	군도 4 호선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열2	중로2-열2	■ 종점변경 - 종점 : 중로2-열1 → 중로2-열4	■ 종점 오기 정정 및 가각부 변경
중로2-열3	중로2-열3	■ 연장 및 종점변경 - 연장 : 243m → 283m(증 40m) - 종점 : 중로2-열1 → 중로2-열4	■ 현장여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및 종점 오기 정정
중로2-열4	중로2-열4	■ 선형·연장변경 및 종점변경 - 연장 : 775m → 854m(증 79m) - 종점 : 중로2-국지67B → 중로2-국지67C	■ 현장여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선형·연장변경 및 종점 오기 정정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689	-	1,689		
기정	1	노외주차장	개진면 직리 산156-2번지 일원	1,689	-	1,689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3,023	-	3,023		
변경	1	공원	소공원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3,023	-	3,023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 소공원 지변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55,891	증) 3,238	59,129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개진면 직리 산15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13번지 일원	1,685	-	1,685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개진면 직리 269-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69-1번지 일원	3,944	감) 1	3,943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개진면 직리 313-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313-1번지 일원	5,705	-	5,705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개진면 직리 308-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308-11번지 일원	1,691	증) 72	1,763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개진면 직리 산156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6-8번지 일원	13,407	증) 3,052	16,459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개진면 직리 산152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2번지 일원	29,459	증) 115	29,574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지번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2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 3,944㎡ → 3,943㎡ (감 1㎡)	■ 경계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지번 및 면적변경 - 면적 : 1,691㎡ → 1,763㎡ (증 72㎡)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번변경 및 현장여건·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지번 및 면적변경 - 면적 : 13,407㎡ → 16,459㎡ (증 3,052㎡)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번변경 및 현장여건·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변경 - 면적 : 29,459㎡ → 29,574㎡ (증 115㎡)	■ 현장여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903	증) 83	986		
변경	1	배수지	개진면 직리 산148-2번지	903	증) 83	986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배수지	■ 배수지 면적변경 - 면적 : 903㎡ → 986㎡ (증 83㎡)	■ 현장여건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라)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3,053	-	3,053		
변경	1	유수지	저류 시설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3,053	-	3,053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유수지 지변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마)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484	-	1,484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종말 처리장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1,484	-	1,484	고령군 고시 제2014-843호 (2014.12.29)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지변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124,549	119,382			124,549	119,382	
산업	산업1	12,364	12,358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6-2번지 일원	12,364	12,358	블록 내 분할 가능
	산업2	17,714	17,720	개진면 직리 324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318번지 일원	17,714	17,720	
	산업3	11,866	5,023	개진면 직리 산152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2번지 일원	11,866	5,023	
	산업4	18,247	22,804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5번지 일원	18,247	22,804	
	산업5	11,178	11,178	개진면 신안리 535-4번지 일원	개진면 신안리 535-9번지 일원	11,178	11,178	
	산업6	29,449	34,319	개진면 직리 산156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6-8번지 일원	29,449	34,319	
	산업7	11,684	3,933	개진면 직리 산150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6-8번지 일원	11,684	3,933	
	산업8	12,047	12,047	개진면 신안리 산12-9번지 일원	개진면 신안리 산12-16번지 일원	12,047	12,047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위 치	면적(m ²)	비 고
계		4,589		4,589	
지원	지원1	4,589	개진면 직리 산156-2 임	4,589	블록 내 분할 가능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7,129	7,212			7,129	7,212	
기타	주1	1,689	1,689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56-2번지 일원	1,689	1,689	주차장 (분할금지)
	수도1	903	986	개진면 직리 산148-2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산148-2번지 일원	903	986	수도공급시설 (분할금지)
	유1	3,053	3,053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3,053	3,053	유수지 (분할금지)
	수1	1,484	1,484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1,484	1,484	수질오염 방지시설 (분할금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 ~ 산업8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색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용도	허용 ■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외벽의 색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타	주1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비율 70%와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면적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한다.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 간선가로에 면한 주차장의 도로변 외벽은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등 가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이하의 투시형 또는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타	수도1	용도	허용 ■ 수도공급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유1	용도	허용 ■ 우수지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및 외관	-
	수1	용도	허용 ■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시설용지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획지는 지정된 위치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획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보행출입구 - 건축물 주출입구에서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의 설치 -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고령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나)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5m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 가로수 식재방법 -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 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을 조성한다. - 가로활동이 활발한 상업지역 주변의 중앙분리대는 관목식재를 배제하고 교목을 주로 식재하여 도심부의 자연적 경관을 도모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 차선도색형 교통섬의 식재 - 차량의 주행에 이용되지 않는 교차로, 지하차로 상부, 고가차도 하부, 터널입구 등에 위치한 차선도색형 교통섬 및 안전지대에는 녹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선도색형 교통섬의 식재는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중교목과 화관목 위주로 식재하며, 횡단보도에 면한 곳에는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와 장애인, 어린이가 쉬어 갈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의 교통섬 및 터널입구 상단부에는 경관수목의 식재 또는 조형물의 설치 등을 통해 통과차량들의 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시스템의 도입 - 도로의 중앙분리대형 가로수의 경우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 도로 옆의 가로수에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적으로 식생이 서식하도록 하며, 가로수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포장원칙 -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도포장 -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버스전용차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보도포장 -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 간격인 8m를 기본 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진입부, 상업용지,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단독주택단지내의 보도 및 연석의 높이는 차도에서 5cm 이내로 하며, 차량출입을 위해 추가로 보도높이를 낮출 수 없다.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

1) 계획급수량

(기정) 585인 (산업시설 인구 539인, 지원시설 인구 46인)

(변경) 562인 (산업시설 인구 516인, 지원시설 인구 46인)

(기정)

구 분		계획인구 및 면적	일최대 급수량(m ³ /일)	급수원단위	비 고
합 계			463.3		
생활 용수	소 계	585인	58.5		
	산업시설용지	539인	53.9	0.1m ³ /인,일	
	지원시설용지	46인	4.6	0.1m ³ /인,일	
공업 용수	소 계	124,549m ²	407.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0,191m ²	259.4	4.31m ³ /천m ² ·일	
	전기장비제조업	23,731m ²	148.1	6.24m ³ /천m ² ·일	
	물류시설	41,627m ²	-	-m ³ /천m ² ·일	

(변경)

구 분		계획인구 및 면적	일최대 급수량(m ³ /일)	급수원단위	비 고
합 계			405.5		
생활 용수	소 계	562인	56.2		
	산업시설용지	516인	51.6	0.1m ³ /인,일	
	지원시설용지	46인	4.6	0.1m ³ /인,일	
공업 용수	소 계	119,382m ²	349.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7,905m ²	249.6	4.31m ³ /천m ² ·일	
	전기장비제조업	15,980m ²	99.7	6.24m ³ /천m ² ·일	
	물류시설	45,497m ²	-	-m ³ /천m ² ·일	

2) 용수공급계획

-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인근 도로에 매설된 송수관로(350mm)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나. 하수도계획

1) 우수배제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
-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설계하되 인접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설계
- 오폐수처리장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계획
- 오폐수처리장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과 위치 선정

2)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 발생량

(기정) 253.39㎥/일 (폐수 199.3㎥/일, 생활오수 54.09㎥/일)

(변경) 215.95㎥/일 (폐수 164.0㎥/일, 생활오수 51.95㎥/일)

(기정)

구 분	오·폐수 발생량 (㎥/일)	비 고
계	253.39	
폐 수	199.3	폐수량, 지하수량
생 활 오 수	54.09	분뇨발생유량, 잡배수 발생유량, 지하수량

(변경)

구 분	오·폐수 발생량 (m ³ /일)	비 고
계	215.95	
폐 수	164.0	폐수량, 지하수량
생 활 오 수	51.95	분뇨발생유량, 잡배수 발생유량, 지하수량

- 오수배제계획은 지구 내 발생 오수를 단지비탈에 따라 자연 흘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 후 방류

다. 방재계획(유수지)

- 사업지구 내 저류시설 1개소를 설치
- 홍수방재기능과 초기우수의 비점오염원 유입 차단함으로써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합 계		-		3,053	
유 수 지 (저류시설)	1	개진면 직리 271-1번지 일원	개진면 직리 271-6번지 일원	3,053	

라. 폐기물처리계획

1) 발생량 추정

(기정)

구 분	폐기물 발생량(ton/일)			비 고
	계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305.9	305.3	0.6	
매립	2.0	1.8	0.2	
소각	1.3	1.2	0.1	
재활용	23.9	23.6	0.3	
지정폐기물	278.7	278.7	-	

(변경)

구 분	폐기물 발생량(ton/일)			비 고
	계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298.8	298.2	0.6	
매립	2.0	1.8	0.2	
소각	1.3	1.2	0.1	
재활용	25.3	25.0	0.3	
지정폐기물	270.2	270.2	-	

2) 폐기물처리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 등은 분리수거를 통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 폐기물은 자원재생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매립 2.0톤/일 및 단지 내 처리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 270.2톤/일 및 소각폐기물 1.3톤/일은 전면 위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전력공급계획

(기정)

구 분	전력 소요량(kWh/년)	비 고
계	1,523	
생 산 시 설	1,306	
기 타 시 설	217	

(변경)

구 분	전력 소요량(kWh/년)	비 고
계	1,479	
생 산 시 설	1,264	
기 타 시 설	215	

- 전력공급은 쌍림 변전소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하며, 산업단지의 지역적 특성 및 단지환경을 고려하여 선로를 계획

바. 통신공급계획

(기정)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수 요 량	비고
합 계			194	
산업시설용지	539명	1.0회선/10인	54	
지원용지	4,589㎡	0.3회선/10㎡	138	
공중전화	539명	1.0회선/500인	2	

(변경)

구 분	규 모	회선기준	수 요 량	비고
합 계			192	
산업시설용지	516명	1.0회선/10인	52	
지원용지	4,589㎡	0.3회선/10㎡	138	
공중전화	516명	1.0회선/500인	2	

8.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가.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에 의거 조성면적이 30만㎡ 미만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10.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고령군 투자유치과(☎054-950-67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기정: 계(77필지)				222,811	220,688						
변경: 계(78필지)				220,897	220,552						
1	기정	개진면 신안리	장	256	256	주식회사 홈스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	장	2,381	2,272	주식회사 홈스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2	변경	"	장	2,268	2,268	주식회사 홈스타 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	장	4,740	4,740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3	변경	"	장	4,739	4,739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	장	280	95	경상북도					
4	변경	"	장	86	86	경상북도					
5	변경	"	장	7	7	경상북도					
6	기정	"	임	146	146	경상북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기정	"	산12-14	도	346	1	고령군				
8 기정	"	산12-16	임	13,850	13,850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개진면 신안리	산12-6	도	620	268	고령군				
9 변경	"	산12-18	도	22	22	고령군				
10 변경	"	산12-19	도	227	227	고령군				
- 기정	"	산12-15	도	92	3	고령군				
11 변경	"	산12-20	도	6	6	고령군				
12 기정	"	산13-1	임	4,548	4,548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13 기정	"	산14-1	임	212	212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14 기정	"	산15-7	임	5,658	5,658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15 기정	"	산15-13	임	425	425	경상북도				
- 기정	"	산15-8	도	83	6	고령군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변경	"	산15-15	도	1	1	고령군					
- 기정	"	산15-11	도	502	260	고령군					
17 변경	"	산15-16	도	179	179	고령군					
기정	"	산26	구	211	1	국(국토교통부)					
- 변경	"	-	-	-	-	-					
- 기정	개진면 신안리	산26-1	구	153	138	국(국토교통부)					
18 변경	"	산26-2	구	119	119	국(국토교통부)					
19 기정	개진면 직리	263-1	답	391	391	주식회사 홈스타홀딩스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 기정	"	263-13	답	222	78	경상북도					
20 변경	"	263-14	답	78	78	경상북도					
21 기정	"	268-11	답	235	235	경상북도					
22 기정	"	269-1	답	643	643	주식회사 보광홀딩스 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기정	"	269-10	답	1	1	고령군					
24 기정	"	269-11	답	320	320	경상북도					
25 기정	"	270-1	답	1,210	1,210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 기정	"	270-7	답	181	132	경상북도					
26 변경	"	270-8	답	133	133	경상북도					
27 기정	"	271	답	83	83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외1인	대구광역시 북구노원로 139-6 (노원동3가)				
28 기정	"	271-3	장	4,623	4,623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개진면 직리	271-1	장	12,947	12,913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29 변경	"	271-6	장	12,914	12,914	주식회사 홈센타 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	271-5	장	151	58	경상북도					
30 변경	"	271-7	장	58	58	경상북도					
31 기정	"	272	답	321	321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2 기정	"	273	답	1,517	1,517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33 기정	"	274	전	549	549	주식회사 보광홀딩스 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34 기정	"	275	전	502	502	주식회사 보광홀딩스 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35 기정	"	276-1	답	1,432	1,432	주식회사 보광홀딩스	경북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36 기정	"	276-8	답	156	156	경상북도				
37 기정	"	277-10	답	161	161	경상북도				
38 기정	"	290-4	답	5	5	주식회사 보광홀딩스 외 1인	경북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39 기정	"	308-2	장	420	420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40 기정	개진면 직리	308-9	전	34	34	고령군				
41 기정	"	308-10	전	13	13	고령군				
42 기정	"	308-11	장	1,510	1,510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43 기정	"	309-1	장	659	659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기정	"	309-5	장	659	659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 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45 기정	"	310	전	450	450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주식회사보광홀딩스 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46 기정	"	311	전	385	385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47 기정	"	312	전	1,514	1,514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48 기정	"	313-1	대	1,386	1,386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49 기정	"	313-5	대	22	22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50 기정	"	314-1	답	350	350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51 기정	"	315-2	전	9	9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52 기정	"	316-1	답	654	654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2가)		
53 기정	"	317-4	답	673	673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54 기정	"	318	전	3,561	3,561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55 기정	개진면 직리	319	전	66	6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6 기정	"	320	임	397	397	주식회사 홈타워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57 기정	"	321	전	1,021	1,021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58 기정	"	322	임	99	99	주식회사 홈타워홀딩스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노원로 139-6 (노원동3가)			
59 기정	"	325	전	1,180	1,180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60 기정	"	863-4	구	28	28	국(국토교통부)				
61 기정	"	863-5	구	2,439	2,439	국(국토교통부)				
- 기정	"	863-6	구	77	41	국(국토교통부)				
62 변경	"	863-7	구	40	40	국(국토교통부)				
63 기정	"	864-2	도	386	386	국(농림축산식품부)				
- 기정	"	865-1	도	335	287	국(국토교통부)				
64 변경	"	865-3	도	288	288	국(국토교통부)				
65 기정	"	866	도	621	621	국(국토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 기정	"	산148-2	임	11,113	11,113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67 기정	개진면 직리	산150-2	임	13,070	13,070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68 기정	"	산151	임	1,190	1,190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69 기정	"	산152	임	33,322	33,322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노원동3가)			
70 기정	"	산153	임	198	198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71 기정	"	산154	임	1,983	1,983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72 기정	"	산155	임	29,752	29,752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73 기정	"	산156-2	임	11,373	11,373	주식회사 보광홀딩스외 1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692-12			
74 기정	"	산156-8	임	40,317	40,317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 기정	"	산156-9	임	101	41	경상북도				
75 변경	"	산156-11	임	32	32	경상북도				
- 기정	"	산156-10	임	68	33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1인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6 변경	"	산156-12	임	33	33	주식회사 보광산업개발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노원동3가)				
77 기정	"	산186	구	529	529	국(국토교통부)					
78 기정	"	산187	구	694	694	국(국토교통부)					



시 군

공 고

안동시 공고 제2025-2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용상동 산46-1번지 일원 안동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안 동 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산4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6호선) 사업

3. 사업의 규모

번호	도로명	전체현황	금회개설현황	면적(㎡)	비 고
1	도시계획도로 (중로3-6호선)	B=12.0~18.0m, L=2,280.0m	B=12.0~18.0m, L=322.0m	3,26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대신자산신탁 대표자 김송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8. 11. 2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변경있음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안동시 용상동	968-7	대	204	41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2	안동시 용상동	968-8	대	197	49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3	안동시 용상동	968-9	대	194	38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4	안동시 용상동	968-10	대	219	52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5	안동시 용상동	968-11	도	609	18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6	안동시 용상동	985-2	대	168	25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7	안동시 용상동	986-1	대	209	38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8	안동시 용상동	986-2	대	226	44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9	안동시 용상동	986-3	대	387	35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	편입면적 (㎡)	성명 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0	안동시 용상동	986-4	대	128	29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1	안동시 용상동	986-5	대	113	24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2	안동시 용상동	986-6	대	122	122	안동시	공				
13	안동시 용상동	986-7	대	25	25	안동시	공				
14	안동시 용상동	968-24	도	16	16	안동시	공				
15	안동시 용상동	987-12	전	158	158	안동시	공				
16	안동시 용상동	987-16	대	12	12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7	안동시 용상동	987-17	대	20	20	안동시	공				
18	안동시 용상동	1193	전	533	65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19	안동시 용상동	1193-7	전	224	69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0	안동시 용상동	1193-12	전	338	338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21	안동시 용상동	1193-13	전	444	440	안동시	공				
22	안동시 용상동	1193-14	전	40	40	이*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조*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가등기 권자	오타 수정
						안동시	공				
23	안동시 용상동	1194	대	462	92	이*영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	조*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가등기 권자	오타 수정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24	안동시 용상동	1194-1	대	407	407	안동시	공				
						이*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이*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이*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 **				
						당초 손*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변경 이*영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길 ***** **	조*연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 **		소유자 변경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25	안동시 용상동	1195	대	300	98	대신자산 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26	안동시 용상동	1195-15	대	234	234	안동시	공				
						이*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이*영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				
						이*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이*운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이*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 **				
27	안동시 용상동	1195-17	대	71	71	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안동시	공				
28	안동시 용상동	1195-18	대	40	2	안동시	공				
29	안동시 용상동	1195-19	전	154	154	안동시	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도시계획시설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30	안동시 용상동	1195-20	임	55	38.5/55	김*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				
					3.3/55	홍*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				
					3.3/55	김*민	세종특별자치시 ***** **				
					3.3/55	이*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				
					3.3/55	박*에	세종특별자치시 ***** **				
31	안동시 용상동	1196	천	1,365	154	국토교통부	국				
32	안동시 용상동	1524-10	도	7	7	국토교통부	국				
33	안동시 용상동	1524-39	대	18	18	기획재정부	국				
34	안동시 용상동	1524-40	대	13	13	기획재정부	국				
35	안동시 용상동	1543-123	구	1,133	59	농림축산 식품부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도시계획시설	성명 또는명칭	주소	성명 또는명칭	주소	권리 관계	
36	안동시 용상동	1543-84	대	53	53	기획재정부	국				
37	안동시 용상동	1543-106	대	21	21	안동시	공				
38	안동시 용상동	1543-107	대	68	68	기획재정부	국				
39	안동시 용상동	1543-108	대	6	6	안동시	공				
40	안동시 용상동	1545	구	886	45	농림축산 식품부	국				
41	안동시 용상동	1535-7	도	233	9	농림축산 식품부	국				
합계				10,112	3,264						

7. 공람장소, 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용상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6호선)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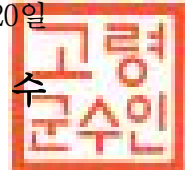
고령군 공고 제2025-1456호

고령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공고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의 (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령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 등록전환 측량 결과 면적 반영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선형 일부 정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협의

2. 열람일시 및 장소

- 열람일시 : 2025. 10. 20. ~ 2025. 11. 03.(14일 이상)
- 열람장소 : 고령군청 도시과

3.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내용

구분	종류	명칭	사업 시행자	위치	사업규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비고
당초	군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씨케이 폐기물처리 시설 증축사 업	(주)씨케이 대표 허승호, 김남운	다산면 송곡리 일원	A = 5,441m ²	2007. 07. 19. ~ 2025. 12. 31.	
변경					A = 5,449m ² (등록전환 면적 반영 및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선형 일부 정정)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30, 302동 1605호
(명곡미래빌3단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7길 10, 1103동 2002호
(상인동, 상인화성파크드림)

나. 성 명 : 허승호, 김남운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
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내용
: 붙임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도시과 (054-950-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 계				33,046	5,441						
				33,046	5,449						
필지수				7필지	7필지						
				2필지	2필지						
1	다산면 송곡리	1040-4	잡	1,524	1,524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5,189	5,189						
2	다산면 송곡리	1040-5	잡	3,274	3,274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	-						
3	다산면 송곡리	1040-6	잡	248	248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	-						
4	다산면 송곡리	1040-7	잡	19	19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	-						
5	다산면 송곡리	1040-8	잡	124	124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	-						
6	다산면 송곡리	산104-6	임	213	25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	-						
7	다산면 송곡리	산104	임	27,644	227	주식회사 씨케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로 54-58				
				27,857	260						

칠곡군 공고 제2025-1228호

칠곡 군계획시설(도로:중로2-10호선)사업 실시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칠곡 군계획시설(도로:중로2-10호선)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0.

칠 곡 군 주



1. 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명 칭	위 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예정)	비고
		시점	종점			
군계획시설 (도로) 사업	중리~구평간 연계도로개설공사 (중로2-10호선)	중리 761-27번지	중리 산3-2번지	B=16.5~18.25m L=1,047m	실시계획인가 일로부터 5년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칠곡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4. 열람 일시, 장소 및 의견제출

- 열람기간 : 2025. 10. 20 . ~ 2025. 11. 3.
- 관계도서 비치 및 열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23)
-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5.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편입용지조서

구분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권리 구분	관계인 주 소	비고
	읍	리			공부	편입				
1	석적	중	761-3	답	2	2	칠곡군			
2	"	"	산10-19	임	45	45	칠곡군			
3	"	"	산10-17	임	5,007	5,007	칠곡군			
4	"	"	산9-2	임	298	298	칠곡군			
5	"	"	35-1	유	337	337	칠곡군			
6	"	"	산9-8	임	147	147	칠곡군			
7	"	"	33-3	유	1,786	1,786	칠곡군			
8	"	"	산9-7	임	1,220	205	칠곡군			
9	"	"	33-2	유	618	618	칠곡군			
10	"	"	879-2	도	489	134	칠곡군			
11	"	"	31-1	유	4,524	3,431	칠곡군			
12	"	"	산7-1	임	7,548	2,859	칠곡군			
13	"	"	산6-1	유	461	359	칠곡군			
14	"	"	761-27	답	68	68	장*숙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50(태전동)			
15	"	"	761-28	답	21	21	장*숙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50(태전동)			
16	"	"	761-4	답	22	11	장*숙외 1인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50(태전동)			
17	"	"	산9-11	임	766	766	칠곡군			
18	"	"	산9-12	임	68	68	칠곡군			
19	"	"	산9-9	임	3,806	3,806	칠곡군			
20	"	"	36-1	유	195	195	칠곡군			
21	"	"	31-2	유	249	249	칠곡군			
22	"	"	산4-6	임	29	27	칠곡군			
23	"	"	산5-2	임	88	88	칠곡군			
24	"	"	산6-2	임	6,467	3,794	칠곡군			
25	"	"	산4-5	임	15,500	9,442	칠곡군			
26	"	"	5-2	임	530	530	토지소유자 복구할 토지임			
27	"	"	3-3	임	840	840	이*상 석적읍 남울동 160			
28	"	"	4-3	임	634	634	토지소유자 복구할 토지임			
29	"	"	산2-2	임	13,003	10,091	칠곡군			
계					64,768	45,858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삼수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27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71-10번지 외 1필지 면적 : 47㎡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건물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 ○ 시설개요 : - ① 콘크리트 포장(T=20cm) A=33㎡ - ② 복개 슬라브(B=1.1m) L=9.5m - ③ 다이크 설치(H=0.2m) L=34.8m - ④ PE이중벽관(D250mm) L=1.0m - ⑤ 집수정(600×600×1,000mm) 1개 - ⑥ 잔디식재(줄떼) A=8.0㎡
점 용 기 간	2025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10월 14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식회사 와이어블 주소 : [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타워 11층 (☎02-2077-3114) [동부센터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1, 대성 빌딩 3층 301호 (☎053-253-8778)
점 용 위 치 및 면적	1.96㎡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 시설개요 : 강관주 1개소 (H=20m, A=1.96㎡)
점 용 기 간	2025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10월 14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영천시장(건축디자인과장)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 640번지 면적 : 363.82m ²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영동교~영천우방타운 간 강변경관 개선사업 ○ 시설개요 : - ① 장송수목등기구(234×234×240mm) 20개 - ② 별빛조명기구(94×125×3,000mm) 5개 - ③ 상징조형물(17,360×3,170×6,000mm) 1개 - ④ 디자인쉼터 평상(2,000×2,000×450mm) 1개 - ⑤ 디자인쉼터 벤치(1,960×820×900mm) 4개 - ⑥ 디자인 파고라1(18,240×6,075×3,410mm) 1개 - ⑦ 디자인 파고라1 지역 벤치(2,000×450×450mm) 3개 - ⑧ 파랑계단1 난간설치(30,000×1,200mm) 2면 - ⑨ 황토길산책로 A=220m² - ⑩ 황토길산책로 석재 벤치(1,500×400×450mm) 7개 - ⑪ 황토길산책로 스텝등(180×85×35mm) 72개 - ⑫ 황토길산책로 빛나무수목등(Φ400, 지주포함) 19개 - ⑬ 디자인 파고라2(5,500×4,000×3,410mm) 1개 - ⑭ 파랑계단2 난간설치(18,000×1,200mm) 2면 - ⑮ 공원등(100×150×3,950mm) 27개 - ⑯ 분전함(300×250×1,950mm) 5개
점 용 기 간	2025년 10월 15일부터 2030년 10월 14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61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장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856-4번지 일원 면적 : 199.0㎡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장명양수장(농업용수)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기간연장 ○ 시설개요 - 집수매거(1.0m×1.0m) L=94m - 흡입조(B=2.0m×3.6m) 1개소
점 용 기 간	당초 :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5년 08월 31일까지 변경 : 2025년 09월 01일부터 2030년 08월 31일까지



기 타

공 고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공고 제 2025-67호

직인 폐지 공고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직인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인 폐지를 공고합니다.

2025. 10. 23.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대표이사

- 다 음 -

1. 직인 폐지 연월일 : 2025. 10. 14.(화)

2. 직인등록 및 폐지 사유

-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이사장인」 및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인」은 주사무소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획행정팀에서 일괄관리하며, 경상북도RISE센터에서 관리하던 분사무소용 「재단법인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 이사장인」과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인」 총 2개의 직인은 폐지함.

- 아울러 대표이사만 대외적 의사 표현을 하므로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 중인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인」 및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제(RISE)센터장인」 과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RISE센터에서 관리 중인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인 총 3개의 직인을 폐지함.

3. 직인인영 : 총 5종 폐지

폐 지 공 인 명	인 영	사용처	개수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이사장인		경상북도 RISE센터	1개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인		"	"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인		"	"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제(RISE)센터장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
재단법인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인		"	"

끝.